

시정연 2002 특별정책과제

「서울시 사회구조와 정책수요」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2002

연 구 진

박 은 철 도시사회연구부 연 구 원

최 현 재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 II 장 일용노동의 성격	11
1. 일용노동자	11
1) 일용노동자의 현황	11
2) 일용노동자의 문제	15
2. 일용노동시장	22
1) 일용노동시장의 현황	22
2) 일용노동시장의 문제	26
제 III 장 일용노동자의 삶	35
1.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일반현황 및 유형화	35
1) 일반현황	35
2) 유형화	49
2.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53
1) 구직활동	53
2) 임 금	68
3) 외국인 노동자관련	74
3. 노동현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79
1) 노동조건 및 환경	79
2) 노동시간	83
3) 노동강도	85

4. 노동·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	89
1) 노동복지제도	89
2) 사회복지제도	92
3) 실업대책사업	99
제IV장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와 과제	107
1.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	107
2.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과제	109
1)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지원	109
2)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1
3)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지원	113
4)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114
5)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115
제V장 요약 및 결론	119
참고문헌	123

표차례

<표 I-1> 건설업 부도율 동향	3
<표 II-1> 2001년 임금노동자수 현황	11
<표 II-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수(전국)	13
<표 II-3> 산업별·직종별 비정규직 분포(전국)	14
<표 II-4> 건설업의 직종별 종사자수	15
<표 II-5> 건설일용노동자의 1주당 노동시간	17
<표 II-6> 일용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규정	18
<표 II-7> 새벽 인력시장 현황(2001년 3월 현재)	23
<표 II-8> 서울시 직업소개소 현황	24
<표 II-9> 유료 직업소개소의 일용직 취업알선 실적(2001년 상반기)	25
<표 II-10> 서울시 소재 일일취업센터 현황	26
<표 II-11> 1997년 직업소개소 취업알선 실적	29
<표 III-1>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연령 및 학력	35
<표 III-2>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유형화	49
<표 III-3>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	66
<표 III-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 추이	92
<표 IV-1>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노사정합의문 내용	108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의 분석틀	6
<그림 II-1>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의 구성 변화추이	12
<그림 II-2> 이상적인 숙련형성 메카니즘	20
<그림 II-3> 근로자파견사업의 개요	25
<그림 II-4> 유료 직업소개소의 과다징수 소개요금 추정액	28
<그림 II-5> 건설노동시장의 구조	31
<그림 III-1> 창신동의 새벽 인력시장	60
<그림 III-2> 북창동의 새벽 인력시장	63
<그림 III-3>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업무흐름도	8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2년부터 1997년 IMF 구제금융 직전까지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 구제금융 이후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경기가 위축되었다. 특히, 건설업은 1998년에 일반 건설업체의 12.5%, 전문 건설업체의 6.1%가 부도로 회사 문을 닫았다(<표 I-1> 참조). 민간부문은 과거 경제성장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축소·폐지 및 통폐합, 인원 및 기구의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노숙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들의 상당부분은 전직 일용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 건설업 부도율 동향

구분 년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1995년	2,958	145	4.9	19,621	767	3.9
1996년	3,543	196	5.5	21,842	607	2.8
1997년	3,900	291	7.5	23,925	1,061	4.4
1998년	4,208	524	12.5	25,793	1,579	6.1
1999년	5,155	112	2.2	29,704	354	1.2
2000년	7,978	132	1.7	31,823	449	1.4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이에 1998년 중앙정부는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역에 일일취업센터를 설치·운영(기존의 18개 일일취업안내소도 활용)하고, 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경기침체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일일취업센터의 일반 취업알선은 저조하였지만, 전국적으로 1일 평균 3,000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에 추천하여 일용노동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2001년 8월에 외환위기 당시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달러 중에 잔액 60억달

리를 모두 갚아 IMF 구제금융기에서 벗어났지만, 경제위기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장기실업자와 실망실업자가 늘어나고, 절대빈곤층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도시근로자구 중에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떨어지고,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증가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는 등 고용의 안정성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통계적인) 일용노동자의 수가 IMF 구제금융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일용노동자는 2001년 현재 전국 2,238천명(16.8%), 서울시 534 천명(16.7%)에 달한다.

그러나 통계청 일용노동자의 정의는 단순히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 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용노동자와는 거리가 있다. 일용노동자를 이러한 통계적·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 또는 작업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사 또는 작업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로 정의할 경우 서울시에만 공식적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은 약 120만명~140만명의 일용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노동·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용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동경력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각종 노동·복지정책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각종 노동·복지관련 법률 및 제도가 상용노동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혜대상에서 일용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일용노동자관련 통계나 학술문헌도 찾아보기 힘들어, 정부의 각종 통계나 학계의 연구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온 느낌이 있다.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일용)노동시장의 변화, 노동현장의 변화, 노동·복지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서울시 차원의 일용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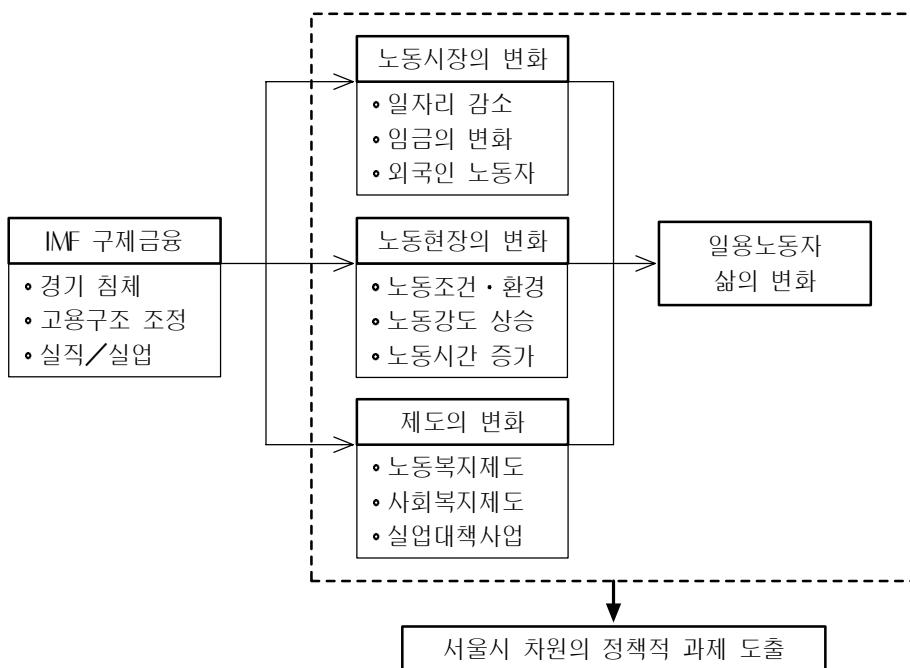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일용노동자이다. 여기에서 ‘일용(日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고용계약기간이 1일이거나 1개월 미만이라는 통계적 · 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 또는 작업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사 또는 작업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즉, 임금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연구의 대상이다.¹⁾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일용노동의 현황과 문제를 일용노동자와 일용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서 노동시장은 노동력도 보통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임금 · 노동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의해 판매·구입되는데, 그 거래를 위해 형성되는 기구나 조직을 의미한다. 즉 일용노동자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구체적’ 노동시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²⁾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임시·일용직의 실직 및 구직난은 사각계층인 이들의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이들 중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처럼 일용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구조적으로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제Ⅲ장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전후(즉, 구제금융기 전, 구제금융기, 구제금융기 후)로 하여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현장의 변화, 노동·복지제도의 변화가 일용노동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장은 총 20명의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약 5개월 간에 걸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통계청에 따르면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그리고 임시근로자(temporary employee)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daily worker)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2)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서울: 경문사, 1996), pp.195-198.



<그림 I-1> 연구의 분석틀

그리고 제IV장에서는 지방정부인 서울시 차원에서 일용노동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일용노동자와의 심층면접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주로 일용노동자의 생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2년 2월 28일~7월 20일까지이며, 이전 면접일에서 다음 면접일까지 약 2주~1개월의 기간을 두고서 개인별로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연구자가 직접 구직현장에 나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일용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일용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5명,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의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5명, 노동부의 동부일일취업센터에서 6명, 유료직업소개소에서 4명 등 총 20명의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결국, 조사대상은 성별로는 남성 일용노동자가 13명, 여성 일용노동자가 7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 40대가 13명, 50대가 2명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2명,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중퇴 2명, 중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중퇴 1명, 고등학교 졸업 7명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건설업 생산직이 8명, 식당일 4명, (건설업·제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가 생기는 대로 일을 하는) 막노동 3명, 중화요리집 주방장과 배달부 각각 1명, 청소부 2명, 파출부 1명이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및 가구의 일반현황 : 성별, 나이, 학력, 가구현황, 직업활동, 기술소지 여부, 성장과정, 가계상황, 주거상태 등
- 노동시장의 변화 : 구직활동, 구직경로, 직업소개료, 평균 노동일, 임금소득, 임금삭감 및 체불 경험과 대응,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등의 증가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과 경쟁관계 등
- 노동현장의 변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내용, 작업환경, (체감) 노동강도, 휴식시간 및 간식 제공 여부, 식사시간 및 식사제공 여부, 노동시간 등
- 노동·복지제도의 변화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지참여부, 퇴직공제 가입 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여부, 각종 정부지원 응자 이용 여부 등

최초 면접조사에서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2차~4차 면접은 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는 작업과 동시에, 최초 면접시 밝혔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제Ⅱ장
일용노동의 성격

1. 일용노동자
2. 일용노동시장

제Ⅱ장 일용노동의 성격

1. 일용노동자

1) 일용노동자의 현황

통계적으로 볼 때 2001년 서울시의 임금노동자수는 총 3,193천명으로 전국 임금노동자의 23.9%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임금노동자 구성비는 상용노동자 42.8%, 임시노동자 40.5%, 일용노동자 16.7%로, 전국의 임금노동자 구성비와 비교할 때 임시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 2001년 임금노동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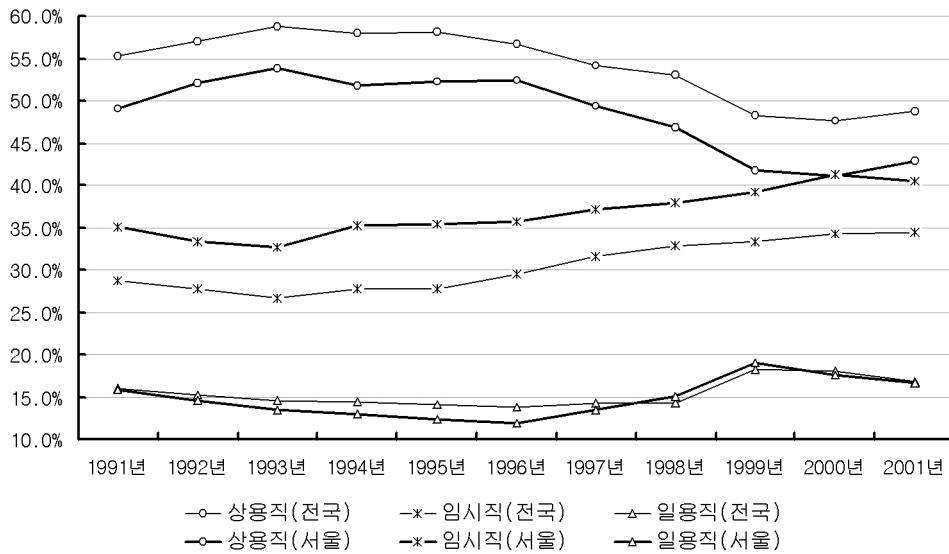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 분	임금노동자			
		상용노동자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전 국	13,339 (100.0%)	6,500 (48.7%)	4,601 (34.5%)	2,238 (16.8%)
서울시	3,193 (100.0%)	1,367 (42.8%)	1,292 (40.5%)	534 (16.7%)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노동자 통계를 이용하여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쳐 통계적 의미인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1994년부터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그림 Ⅱ-1> 참조).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1991년~2001년 사이의 모든 연도에 걸쳐 전국 평균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4.3%에서 6.5%까지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전에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다. 1993년 46.2%에 머물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1997년 50.4%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의 고용대체와 임시직을 위주로 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은 1993년과 1997년 모두 13.5%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림 II-1>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의 구성 변화추이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울시의 임금노동자수는 1997년 3,412천명에서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기 전인 2000년 3,172천명으로 7.0%나 감소하였고, 이 중 대부분은 기업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상용노동자의 감소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0.6%에서 2000년 58.9%로 8.3%나 증가하였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은 1997년 13.5%에서 2000년 17.7%로 4.2% 상승하였다.

1997년~2000년 임금노동자의 증가를 구성별로 보면, 상용노동자는 382천명(22.7%)이 감소하였고,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는 각각 43천명(3.4%), 99천명(21.5%)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상용직 노동자의 임시·일용직화, 임시직 노동자의 일용직화, 일용노동자 사이의 경쟁 증가, 만성 및 실망실업자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II-2>의 2000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¹⁾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을 보면,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이면서도 1년 이상 근로지속가능성이 없거나 일용직이면서도 1년 이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최초로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근로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 근로지속가능성이 있는 등 명목상의 종사상 지위와 실질적인 종사상 지위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무기계약인 임시·일용노동자의 ¾ 이상이 상시고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표 II-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수(전국)

(단위 : 천명)

통계청 분류	고용계약 기간	유기계약		무기계약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1년+Y	1년+N	
전체	전체	1,032	527	10,697	719	12,975
	상용직	0	527	5,698	5	6,231
	임시직	341	0	3,889	209	4,439
	일용직	691	0	1,110	504	2,305
통상근로	전체	565	497	9,439	375	10,875
	상용직	0	497	5,421	4	5,922
	임시직	266	0	3,292	172	3,730
	일용직	299	0	725	199	1,223
파견근로	전체	29	3	96	7	136
	상용직	0	3	44	0	48
	임시직	12	0	39	4	55
	일용직	17	0	13	3	33
용역근로	전체	53	13	213	28	308
	상용직	0	13	71	1	86
	임시직	26	0	111	5	141
	일용직	28	0	31	22	81
대기근로	전체	359	4	314	277	954
	상용직	0	4	42	0	46
	임시직	23	0	74	18	115
	일용직	336	0	198	259	793
독립도급	전체	13	9	519	11	553
	상용직	0	9	118	0	127
	임시직	8	0	320	7	335
	일용직	6	0	81	4	91
재택근로	전체	12	0	116	19	148
	상용직	0	0	2	0	2
	임시직	7	0	53	3	63
	일용직	5	0	62	16	83

주 : 유기계약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고, 무기계약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로지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1년+Y와 1년+N으로 구분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0. 8.

또 1년 이상 근로지속가능성이 없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산업·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일용노동자들은 주로 제조업의 생산직, 도소매업의 판매직, 숙박·음식점업의 서비스직, 건설업의 생산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산업별·직종별 비정규직 분포(전국)

(단위 : 천명)

구 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 계조작 조립	노무직	전직종
농업·임업	0	0	0	0	0	0	32	0	2	97	131
어업	0	0	4	1	0	0	18	3	2	5	33
광업	0	0	0	1	0	0	0	0	2	2	5
제조업	2	23	48	79	16	10	0	545	303	364	1,390
전기사업 등	0	1	1	2	1	0	0	3	1	4	13
건설업	4	6	17	50	1	0	1	526	47	275	927
도소매업	4	7	115	156	12	705	0	45	47	171	1,262
숙박 음식점업	0	3	17	20	799	7	0	13	7	89	955
운수업	1	0	10	36	8	0	0	5	142	41	243
통신업	0	2	3	15	1	4	0	8	1	18	52
금융 보험업	3	4	13	81	2	203	1	1	1	15	324
부동산업 등	3	1	24	29	8	0	0	6	6	80	157
사업서비스업	1	58	59	84	22	12	0	28	18	245	527
공공행정 등	5	5	6	63	9	0	1	5	3	89	186
교육서비스업	1	146	148	48	39	3	0	3	13	11	412
보건사업 등	0	33	55	16	36	1	0	1	1	10	153
문화산업 등	1	12	26	17	62	1	0	6	2	15	142
개인서비스업	1	13	32	36	96	1	2	64	14	44	303
가사서비스업	0	0	1	0	83	0	0	0	1	64	149
국제기관 등	0	0	0	1	0	0	0	2	0	1	4
전산업	26	314	579	735	1,195	947	55	1,264	613	1,640	7,3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1. 8.

하지만 건설업 노동시장은 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노동시장에 비해 그 규모는 적지만, 건설업의 임시·일용직 고용률은 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

업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일용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산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일용노동자의 비중이 64.5%로 매우 높다(<표 II-4> 참조). 이는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공종 및 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주문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²⁾은 중층화된 하도급구조 등 생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4> 건설업의 직종별 종사자수

년도	종사자 전체	피고용자	사무직 및 기타	생산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기술자	기능공		
2000년	1,342,192	1,322,535	152,122	1,170,412	201,466	115,293	853,653	19,657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2) 일용노동자의 문제

(1) 고용불안

일용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이자 특성은 고용불안이다. 일용노동자는 소정의 공사 또는 작업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날마다 일을 구해야 한다. 게다가 계절의 영향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대부분이 십장, 동료, 주변 사람 등의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일용노동자의 직업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한다.

또한 소정의 공사 또는 작업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용노동자들은 십장이나 반장에게 잘못 보이면 일을 못할

2) 일본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 중 일용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대다수의 노동자가 상용직이다. 실업대책모니터링팀, 「서울시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p.23.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노동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인 유급주휴제나 초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³⁾, 노동현장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일용노동자의 처지가 원인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곧바로 생활불안으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의 예측불가능성이 생활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직결되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용노동자들 중에 직장 및 가정생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차별대우 및 열악한 근로조건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빈약한 사회복지를 기업의 ‘사내 복지’가 일정 정도 대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승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법정퇴직금,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사내 복지기금 및 융자제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용노동자에게 있어 사내 복지는 꿈같은 바람이다. 왜냐하면 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에게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일용노동자들은 사내 복지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913천원과 688천원으로,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670천원보다 크게 낮았다.⁴⁾ 또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과 상여금 수혜비중이 각각 1.0%와 1.1%에 그쳤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임시직은 7.4%, 일용직은 2.0%이었다.

반면에 이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안정성과 실제 근속기간 등 근

3) 2001년 7월 23일 대법원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일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하였다.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24일자 참조.

4) 사실 일용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부문은 기능공의 경우 일당만 놓고 보면 중소제조업 상용직보다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드물고, 겨울철의 경우 1주일도 제대로 일하기 힘들 정도로 일거리가 없다. 게다가 건설부문 일용직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의 잡부 및 조공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무사정은 상용직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노동자를 지칭하지만, 실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44.0%에 이르렀으며, 18.4%는 3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정해지는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도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이 18.1%에 이르렀다.⁵⁾ 결국 임시노동자의 44.0%와 일용노동자의 18.1%는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노동관련 법상의 노동·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49조),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55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일용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건설일용노동자의 1주당 노동시간

년도	제조업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조사기관
1996년	47.8시간	65.1시간	한국노동연구원
1999년	50.0시간	68.6시간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49.3시간	70.3시간 62.3시간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부

주 : 노동부의 2000년도 조사결과는 휴일이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8.9시간(1일)×7일로 환산함.

자료 : 박인상·이호웅,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1.

또한 일용노동자에게도 1주일에 6일 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하지만 많은 일용노동자들은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주일 또는 1개월을 만근하지 못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는 일용노동자의 처지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5)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17일자.

뿐만 아니라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처럼 작업공간이 위험요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작업현장을 뛰어 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사용자로부터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일용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낯선 작업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 노동·복지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정부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을 통해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체계는 이미 갖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4대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어 있는 최대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4대 사회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일용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대부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표 II-6> 일용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규정

사회보험	적용제외 규정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미만의 공사(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 •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 1개월 80시간 미만, 1주 18시간 미만인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임의적용 사업장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1제 ~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또는 3개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자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하지만 실제 가입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일용노동자들이 잘 모르는 탓

도 있지만, 고용불안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일용노동자의 처지와 노동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용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노동자로서 스스로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일용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도 기업들의 기피로 인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상용직 남성노동자는 88.0%, 상용직 여성노동자는 83.9%인데 비해, 임시·일용직 남성노동자는 17.0%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임시·일용직의 경우 가입률이 더 저조해 13.2%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도 상용직 남성노동자는 91.0%, 상용직 여성노동자는 86.3%에 달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 남성노동자는 21.3%, 여성노동자는 14.7%로 낮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데다가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워 가입률이 더 저조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남성노동자의 75.6%, 상용직 여성노동자의 69.1%가 가입한 데 비해, 임시·일용직의 경우 남성노동자는 18.6%, 여성노동자는 14.6%만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⁶⁾

특히, 건설근로자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2000년 1월부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기피로 작성률이 저조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일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기업의 홍보부족으로 일용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월부터 시행중인 퇴직공제제도의 수혜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퇴직 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속된 기업(또는 사업장)이 없는 일용노동자들은 주택자금 융자마저도 받기 힘들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등 일용노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연히 일을 하여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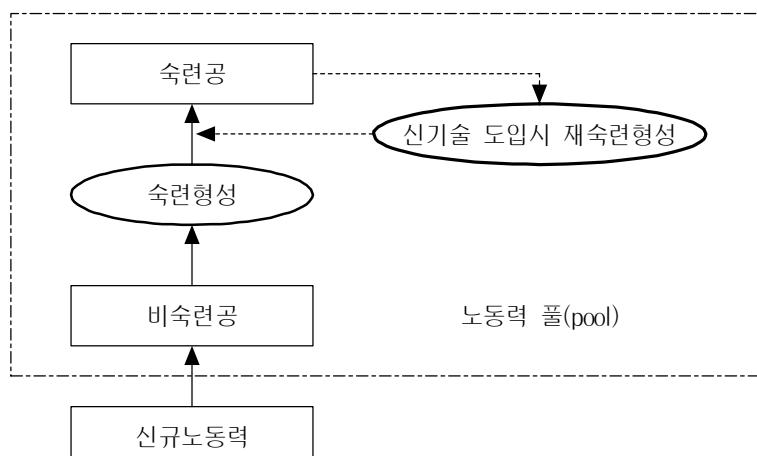
6) 국민일보 2002년 2월 15일자.

소위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 은행에서 응자마저도 받기 힘들다.

(4) 숙련형성통로의 부재

열심히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기능공이 되는 것은 일용노동자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용노동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도 없고, 경력인정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상적인 숙련형성 메카니즘은 <그림 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숙련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규노동력(특히, 청년 층)이 충분히 유입·정착됨으로써 노동력 풀(pool)이 풍부해져야 한다. 다음으로 유입된 신규노동력은 비숙련공으로서 일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숙련형성과정을 거쳐 숙련공으로 상승하여야 하며, 일단 숙련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재(再)숙련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⁷⁾



<그림 II-2> 이상적인 숙련형성 메카니즘

하지만 일용노동시장에서는 <그림 II-2>와 같은 숙련형성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용노동자들은 기능공이 되는 꿈조차 간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현장에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능습득의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공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노

7) 심규범, 「한국 건설노동시장의 비공식성과 숙련형성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12.

동현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잡부나 조공들은 노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기능공에게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능공들에게 있어 잡부나 조공에게 기술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습득을 원하는 잡부나 조공은 낮은 임금을 각오하고 특정 기능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일용노동현장의 기술에는 등급과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기능공이라는 사람마다 기술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십장이나 반장이 책정한 임금이 곧 기술의 등급이다. 하지만 십장이나 반장의 임금책정에는 친소관계나 자금사정 등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많은 일용노동자들이 일단 기능공이 되면, 이후로는 더 이상 기능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에는 일용노동자 개인의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2. 일용노동시장

1) 일용노동시장의 현황

(1) 새벽 인력시장

일용노동자의 취업은 인맥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새벽 인력시장, 유료 직업소개소, 무료 직업소개소, 노동부 일일취업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숙련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인맥을 제외하면 일용노동시장 중에 새벽 인력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 인력시장은 2001년 3월 현재 서울시 내에 15개 정도가 있다(<표 II-7> 참조). 이 중에서 14개 새벽 인력시장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이용하고 있고,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은 중국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가 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전에는 더 많은 새벽 인력시장이 있었는데, IMF 구제금융 한파로 인해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새벽마다 북적대던 달동네 인력시장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달동네 인력시장 가운데 꽤 이름이 알려진 관악구 신림동 ‘난곡마을’의 경우는 새벽에 나오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적어 1999년에 시장기능을 상실했다. 영등포로터리 근처나 신길동 우신극장 앞 등의 새벽 인력시장은 1998년에 이미 모습을 감추었다.

직업소개소가 많아지면서 몇 년 사이에 종로구 낙원동의 밤무대 악사 인력시장이나 종로5가 봉제공 인력시장과 같은 특정 기술직 인력시장들도 사라졌다. 이처럼 새벽 인력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명맥을 잃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급랭이 직접적인 원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늘어난 것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01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면서 새벽 인력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현재 창신동의 새벽 인력시장은 300명이 넘는 일용노동자들이 1시간 내에 일자리를 구할 정도로 구직환경은 IMF 구제금융기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다른 건설업관련 새벽 인력시장도 거의 모든 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을 회복하였다. 북창동의 새벽 인력시장 역시 내국인 일용노동자는 물론이고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거리를 꽉 채울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 구직자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새벽 인력시장별·업종별로 구인·구직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II-7> 새벽 인력시장 현황(2001년 3월 현재)

위 치	규 모	직종 : 임금	주변여건
노유산4거리 (노유동 246)	50명 ~ 60명 (75% 취업)	- 비계공 : 12만원 - 철근공 : 10만원	- 6m 도로로 장소 협소 - 동부일일취업센터 인접
답십리 조흥은행 (답십리5동 488)	30명 ~ 40명 (40% 취업)	- 벽돌공 : 8만원 - 조적공 : 8만원	- 5m 골목길로 장소 협소 - 유료 직업소개소 인접
면목역 (면목1동 120)	50명 ~ 60명 (3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철근공 : 10만원	- 지하철역 주변
사가정역 (면목3동 497)	25명 ~ 30명 (4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철근공 : 10만원	- 지하철역 30인 간이의자
미나리팡 (천호1동 238)	50명 (5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유료 직업소개소 인접
창신동 (창신동 582)	150명 ~ 170명 (6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철근공 : 10만원	- 중부일일취업센터 인접 - 장소 협소
북창동 (남대문로4가 17)	180명 ~ 200명 (20% 취업)	- 주방장 : 200만원 - 조리원 : 130만원 - 보조원 : 80만원	- 유통업소, 사무실 지역
신정4거리 (신정동 1191)	100명 (6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철근공 : 10만원	- 서부일일취업센터 근접
신월동 (신월3동 166)	30명 (70% 취업)	- 비계공 : 13만원 - 철근공 : 10만원	- 대기시설이 관리부실로 멸실 - 장소 협소
화곡본동 (화곡본동 98)	30명 (90% 취업)	- 비계공 : 10만원 - 철근공 : 10만원 - 콘크리트공 : 10만원	- 56개 사물함 중에 16개 파손
구로공단 (구로4동 803)	70명 (40% 취업)	- 비계공 : 10만원 - 철근공 : 10만원 - 목수 : 10만원	- 주변 상점 새벽 영업
사당동 (사당2동 135)	60명 (70% 취업)	- 철근공 : 11만원	- 주변 대기소에 의자 위치 - 영업 가판점 이용 가능
봉천동 (봉천10동 463)	30명 (50% 취업)	- 철근공 : 10만원 - 비계공 : 10만원	- 화장실이 없어 불편 - 인도로 장소 협소
신림극장 (신림본동 1638)	20명 (50% 취업)	- 철근공 : 10만원 - 비계공 : 10만원	- 상가 앞 도로
신림12동 (신림12동 730)	20명 (50% 취업)	- 철근공 : 10만원 - 콘크리트공 : 10만원	- 도로변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1.

(2) 직업소개소와 근로자파견업체

직업소개소는 크게 무료 직업소개소와 유료 직업소개소로 나누어진다. 무료 직업소개소는 수수료, 회비 등의 금품을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행하는 사업이고,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앞선하면서 수수료, 회비 등을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받고서 직업소개를 하는 사업이다. 2001년 12월말 현재 서울시의 직업소개소는 1,431개소이고, 이 중에서 무료 직업소개소는 141개소, 유료 직업소개소는 1,290개소이다.

<표 II-8> 서울시 직업소개소 현황

(단위 : 개소)

시 기	합 계	무 료	유 료		
			소 계	법 인	개 인
2001년 6월	1,262	76	1,186	382	804
2001년 12월	1,431	141	1,290	364	926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WORKNET(<http://www.work.go.kr>).

유료 직업소개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앞선하는데,⁸⁾ 2001년 상반기에만 전국 3,592개소의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연인원 1,523천명(상용직 5%, 일용직 95%)에게 취업을 앞선하여⁹⁾ 1개소당 약 850명에게 취업을 앞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법인인 유료 직업소개소의 비율(28.2%)이 다른 지역의 법인인 유료 직업소개소 비율 평균(4.1%)보다 높아 1개소당 취업앞선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일용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을 앞선한 일용직 중에 건설현장 노무직이 63.9%를 차지하고, 파출부·식당일 등 판매·서비스직이 1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유료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 또는 파출부·식당일 등으로 특화되어 있었다.

8) 일반적으로 ① 직업소개소에 등록(구인자, 구직자) → ② 직업상담(자격있는 직업상담원) → ③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에 대한 취업앞선(직업소개사업자) → ④ 고용계약의 체결(구인자, 구직자) → 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직업소개요금 납부(구인자, 구직자)의 절차를 거친다.

9) 김동섭·서호원·오성욱, 「직업안정법 해설－행정해석 및 직업소개소 창업·운영－」(서울: (주)중앙경제, 2002), p.76, p.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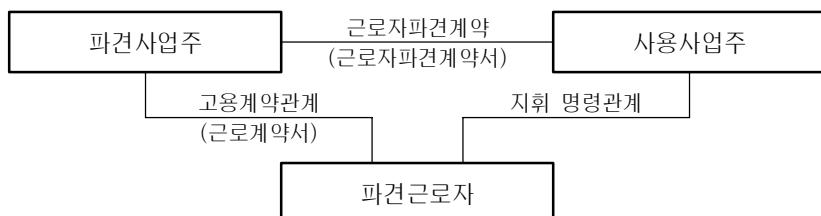
<표 II-9> 유료 직업소개소의 일용직 취업알선 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구 분	건설노동 등 단순노무직	파출부 등 서비스직	기능원 기계조작원	사무직 단순관리직	기 타	계
전 체	925,212	281,993	141,670	43,230	54,726	1,446,831
남 성	762,602	28,216	121,749	15,936	17,764	946,267
여 성	162,610	253,777	19,921	27,294	36,962	500,564

자료 : 김동섭 · 서호원 · 오성욱, 「직업안정법 해설－행정해석 및 직업소개소 창업 · 운영－」(서울: (주)중앙경제, 2002), p.76.

1998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노동자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 사업’을 근로자파견사업이라고 한다(<그림 II-3> 참조). 2001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근로자파견업체가 서울시에 113개소가 있다.



<그림 II-3> 근로자파견사업의 개요

(3)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센터는 1998년 10월 ‘일용직 등 동절기 저소득계층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15개소, 서울시에 4개소가 설치되었다(<표 II-10> 참조). 당시에 일일취업센터는 일용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구인 · 구직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공공근로사업 · 직업훈련 · 실업자 대부사업을 안내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가 등록된 일용노동자 중에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1주일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 구직등록한 일용노동자 중 희

망자에게 조적, 미장, 도배, 도장, 용접, 배관 등의 무료 직업훈련도 알선해 주었다.

<표 II-10> 서울시 소재 일일취업센터 현황

일일취업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동부일일취업센터	광진구 노유1동 238 (조양시장 인근)	467-9090, 469-1919
서울중부일일취업센터	종로구 창신2동 583 (새벽 인력시장 주변)	741-1010
서울남부일일취업센터	양천구 신정3동 1191 육성빌딩 4층	697-1010, 697-1030
서울관악일일취업센터	관악구 봉천10동 888 성림빌딩 2 3층	885-9777, 885-9797

IMF 경제위기를 벗어난 현재 일일취업센터의 역할은 IMF 구제금융기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¹⁰⁾ 일용노동자들도 이곳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새벽인력시장이나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기에는 구직자들에게 일당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일일취업센터는 구직자들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한 현재는 종전의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을 알선하는 소극적 역할보다는 구직자들을 위해 적정임금과 노동조건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2) 일용노동시장의 문제

(1) 취업관련 업체의 난립과 소개료 과다징수행위

일용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관련 업체의 난립과 유료 취업관련 업체의 소개료 과다징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에만 공공은 노동부의 일일취업 센터, 25개 구청의 취업정보은행 등에서, 민간은 유료 직업소개소 1,290개소, 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 79개소, 근로자파견업체 113개소, 기타 종합 사회복지관 등에서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특히 유료 직업소개소는 <표 II-8>에서 보듯이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71.8%를 차지하여 직업소개기관의 난립과 소개료 과다징수행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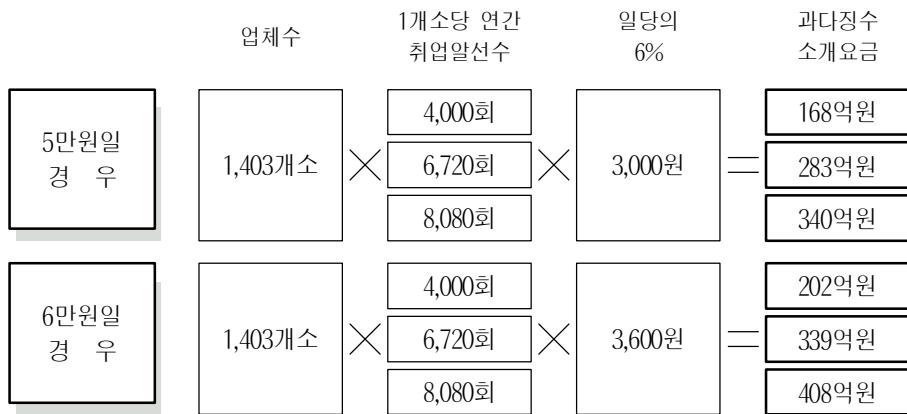
10) 일례로 서울동부일일취업센터의 경우, 2001년 동절기에 주로 광진구 지역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산림 및 녹지관리, 공원시설 정비, 가로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일용노동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유료 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업체 등은 구인자에게 주로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개요금에 모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이들 직업소개기관은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 줄 때마다 일정액의 소개비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직업소개기관은 소개요금에 모든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 상용직보다는 수익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용직의 취업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구조 때문에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을 알선할 때마다 소개료 과다징수행위가 발생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임금의 10%만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임금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구인자가 임금의 6%, 구직자가 임금의 4%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직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소개소와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지키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만 임금의 10%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¹¹⁾ 유료 직업소개소와 근로자파견업체에서 구인자로부터 받아야 할 소개요금을 일용노동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는 액수를 추정해 보면 <그림 II-4>와 같다.¹²⁾ 모든 업체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일용노동자로부터의 부당징수액은 168억원~202억원이 된다. 하지만 법인인 유료 직업소개소와 근로자파견업체를 합친 비율이 34.0%임을 감안하여 하므로, 서울시에서만 적계는 283억원에서, 많게는 40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중간착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파견사업주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파견의 대가(일종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파견사업주는 직업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착취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록형·모집형 파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용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근로계약 체결과 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등록형·모집형 파견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18호, 2000, pp.140-141.

12) 유료 직업소개소와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원 1일당 연간 취업알선수를 기본 4,000회로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사장 포함 직원수가 4명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유료 직업소개법인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만 8,205명을 취업을 알선하여 1인당 4,102회의 취업알선 실적을 거두었는데, 법인업체와 개인업체의 차이를 감안하여 4,000회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의 평균 직원수가 3명이면 전체 업소의 평균 직원수는 1.68명, 4명이면 2.02명임을 감안하여 업소 1개소당 취업알선수를 산정하였다.



<그림 II-4> 유료 직업소개소의 과다징수 소개요금 추정액

일부 유료 직업소개소들의 경우 소개비 외에 일용노동자 일당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일당 6만원을 받는 비숙련공을 9만원을 받는 숙련공이라고 속여 취업을 알선하면서 그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¹³⁾ 또한 극소수 유료 직업소개소 중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근로자파견업체 행세를 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파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할 때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¹⁴⁾

(2) 공공의 역할 미약

일용노동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우선 일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맥이나 스스로의 구직행위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고, 공공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는 1997년 직업소개소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공공은 연인원 173천명을 취업시켰을 뿐이다. 이는 민간 직업소개소의 실적과 비교할 때 8.2%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13) 문화일보, 2002년 3월 11일자.

14) 문화일보, 2000년 12월 19일자.

<표 II-11> 1997년 직업소개소 취업알선 실적

(단위 : 명)

구 분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공 직업소개기관	387,356	173,407	44.8%
민간 직업소개기관	2,342,085	2,116,137	90.4%
합 계	2,729,441	2,289,544	83.9%

자료 : 노동부, 「97 노동백서」, 1998, p.154를 재구성함.

또한 숙련직 건설일용노동자가 부족하고 평균 연령이 50세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¹⁵⁾ 전국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설전문 직업훈련기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IMF 구제금융기인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315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적,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보일러, 배관 등의 훈련직종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 직업전문학교의 2002년 훈련계획을 보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목공 80명, 특수용접 80명,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용접 60명 외에 다른 기능은 전혀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유료 직업소개소 및 근로자파견업체의 소개료 과다징수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3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 또는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유료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 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건설산업연맹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지역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1년 9월말 현재 건설일용노동자의 평균연령은 47.6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규범 박사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 20대 이하의 비율이 19.7%인데 비해, 건설업 기능인력의 경우 이 비율이 9.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젊은 노동력이 건설현장을 외면하면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초보 수준의 건설기능공이 되기까지 4년~5년이 소요되고, A급 기능공이 되기까지는 8년~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령화 및 수급불균형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2년 1월 24일자.

(3) 잘못된 고용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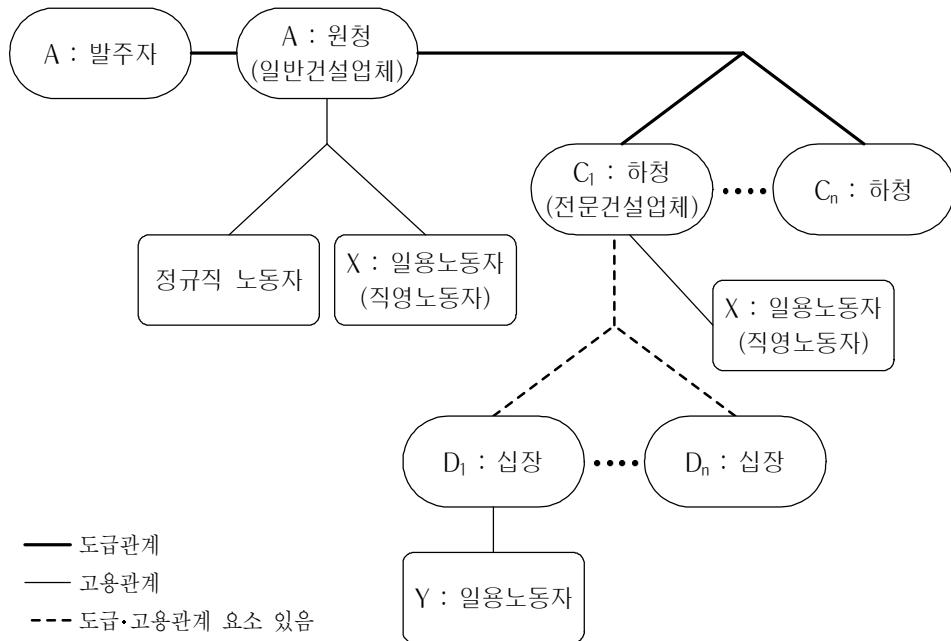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동자에게 있어 서면에 의한 노동계약은 생각하기 힘들다. 근로시간도 1주 44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일용노동자에게는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거의 모든 조항이 일용노동자에게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이 마련·시행되기 전까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명부 작성은 면제해왔다. 그러나 보니 사용주들이 건설현장에서 비교적 장기라고 볼 수 있는 30일 이상 사용하는 건설일용노동자까지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특히 1주일 이내의 사용기간이 짧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인적사항이나 기술숙련도 등도 모른 채 그날그날 사용하고 고용을 종료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 등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정확히 지키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근로자명부의 작성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고용보험 적용 등에 있어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서 노동부는 건설일용근자의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사무실 등 모든 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근로자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건설사업주가 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퇴직공제금을 받는 데 필수적인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을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건설일용노동자도 이러한 퇴직공제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료 : 혀재준, “건설노동시장의 고용관계 특성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p.56.

<그림 II-5> 건설노동시장의 구조

한편 수 차례의 하도급이 존재하는 건설노동시장에서의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관행을 단순화시켜 묘사하면 <그림 II-5>와 같다. 일반적으로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X)와, 심장 휘하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Y)의 두 종류가 있다. 건설노동시장 일용노동자 중 일반건설업체의 직영노동자(X)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직접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¹⁶⁾ 전문건설업체 이하 하청업체의 일용근로자(Y)의 고용관계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노무

16) 노무관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일수와 노임지불여부 확인, 작업지시 등 기초적 노동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고, 일용노동자를 인사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근로경력이나 고용기록이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혀재준, “건설노동시장의 고용관계 특성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p.55.

관리가 십장을 매개로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는 합법적인 건설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자 풀(pool)을 조직하는 십장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도급업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전문건설업체 일용노동자(Y)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중층적 하도급관계를 규율하는 마땅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합법적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직영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관리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상법상의 도급계약에 의해 동원된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무는 십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십장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풀의 책임자 자격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며, 법적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17) 그러나 십장은 노무제공자 풀의 관리자 역할만을 행하고 있을 뿐이며, 십장의 임금체불시 지불책임,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및 치료책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책임 등은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건설사업주가 져야 한다.

제Ⅲ장
일용노동자의 삶

1.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일반현황 및 유형화
2.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3. 노동현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4. 노동 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

제III장 일용노동자의 삶

1.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일반현황 및 유형화

1) 일반현황

(1) 인구사회학적 사항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성별은 남성이 13명, 여성이 7명이었다. 구직활동의 장소 별로는 서울동부일일취업센터에서 남성 3명, 여성 3명, 새벽 인력시장에서 남성 5명,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여성이 4명,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남성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5명, 40대가 13명, 50대 1명, 60대 1명이었다. 이 중에서 남성 일용노동자는 30대가 5명, 40대가 7명, 50대가 1명이며, 여성 일용노동자는 40대가 6명, 60대가 1명이었다.

<표 III-1>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연령 및 학력

구 分		남 성	여 성	전 체
연 령	30 대	5	-	5
	40 대	7	6	13
	50 대	1	-	1
	60 대	-	1	1
학 력	초등학교 중퇴	-	2	2
	초등학교 졸업	-	1	1
	중학교 중퇴	2	-	2
	중학교 졸업	5	2	7
	고등학교 중퇴	1	-	1
	고등학교 졸업	5	2	7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2명, 초등학교 졸업이 1명, 중학교 중퇴가 2명, 중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중퇴가 1명, 고등학교 졸업이 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 20명의 대상자 가운데 12명(60.0%)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일용노동자의 경우에 남성 일용노동자의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3명이었다.

혼인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20명 중에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일용노동자 1명, 미혼인 남성 일용노동자 1명, 이혼한 여성 일용노동자 3명이었다. 조사대상인 여성 일용노동자 7명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3명, 별거 중인 사람이 1명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 남편의 무능력 등에 의한 이혼·별거가 일용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2) 개인력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삶을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소년기는 초등학교 이전인 12세까지, 청소년기는 13세부터 19세까지, 성인기는 20세 이상으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성인기관련 내용은 '(3) 직업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20대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면접대상자들의 개인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면접대상자 20명 중에서 11명이 장남 또는 장녀라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13명 중에 9명이 장남이었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의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 부양을 위해 가정부 생활을 시작한 맘딸] (강○윤, 여, 49세)

2번의 이혼 후 지금은 파출부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강씨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강씨 아버지의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12세가 되던 해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1년에 쌀 3가마니를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집으로 보내주기로 하고서 이웃마을의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을 하였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인 24세까지 한복집 미싱시다, 가정부, 양장점 점원 등의 일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었다.

[가족 부양을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 나간 맏아들] (양○주, 남, 46세)

전라북도 부안에서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양씨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가족들이 먹

고 사는 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집안 형편은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집과 논밭을 팔아 아버지의 치료비를 대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양씨는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17세에 상경하여 막노동을 비롯한 온갖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다. 2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양씨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25세와 27세에 각각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건설현장에 나갔다. 중동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담배와 물을 살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모두 한국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해외 건설현장에서 돌아온 양씨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창신동의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가난 때문에 학업 대신에 일을 택한 일용노동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조사대상자 중에 8명으로 나타났다.

[진학 대신에 일 시작] (이○호, 남, 42세)

서울에서 4남매 중에 맏이로 태어난 이씨는 공업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다. 결국 이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영등포시장의 도매상에서 상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호텔의 웨이터로도 일을 하였다. 한 회사에서 임시직 경비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20대를 변변한 직장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내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제 친구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과 다니면 걱정이 없었어요. 싸움질하다 경찰서에 잡혀가도 워낙 있는 집 자식들이라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저의 20대를 대부분 그렇게 보냈지요. 현재 그 친구들은 기업의 이사로 있거나, 고급술집·당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27살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세상에 찌들지 않은 그런 여자였는데… 결혼의 적령기를 훌쩍 넘긴 지금, 포기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생기기도 힘들겠지만, 지금 제 상태가 누구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진학 대신에 일 시작] (김○중, 남, 36세)

전라북도 구례에서 9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김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소유한 땅이 없었으므로 주로 어머니가 산에 가서 나물을 캐거나 섬진강에서 고등을 잡아서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김씨는 중학교 축구선수로 학비를 면제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되었지만, 고등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학비를 부담할 수 없어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김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성남에 있는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해야 했어요. 야근의 연속이었고 보통 새벽 2시~3시에 일이 끝났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의 연속이었죠. 일 못한다고 맞고, 말 안 듣는다고 맞고, 내 돈으로 선배들에게 빵, 술, 담배를 사다주어야 하는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6개월만에 공장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전파사에서 일하며 전기와 관련된 각종 기술을 배워 20세에 전파사를 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작은 시골마을에 전파사가 8개가 난립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장사를 접고, 22세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전파사를 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일용 전기기술자로 생활하게 되었다.

【중퇴 후 일용노동 시작】(안○진, 남, 52세)

안씨는 5남매 중 장남으로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18살에 철공소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용접기술을 배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처음에는 부모님도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을 말렸어. 철공소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용접하는 것을 배웠지.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일을 배우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정말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웠지.”

그후 안씨는 직조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안씨는 23살과 30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동생들을 위해 부모의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용노동과 장사를 하면서도 계획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조사대상자 가운데에는 가정형편의 어려움 이외에 다른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선택한 일용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대신에 일을 선택한 사람이 2명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상경】(김○준, 남, 46세)

3남매 중 장남인 김씨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김씨는 17세 때에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고 이불 속에 숨겨 둔 돈을 들고 가출하여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에서 온갖 일과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사람 중에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용노동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5명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가정형편】 (곽○현, 남, 41세)

인천이 고양인 곽씨는 3형제 중 맨이로 태어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가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공부를 잘 했다면 대학까지 보내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나갔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 그만두고 소일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1년 8개월 정도 리비아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였다.

(3) 직업력

여기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직업력과 일용노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용노동자들이 왜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고 일용노동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해 본 적이 없고 오직 일용노동만을 해 온 사람이 3명, 정규직 노동자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용노동을 시작한 사람이 6명, 개인사업 혹은 자영업을 하다가 일용노동을 시작한 사람이 5명, (전업)주부로 있다가 일용노동을 시작한 사람이 4명,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일용노동을 시작한 사람이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경제활동 경험이 없이 일용노동자 생활을 해 온 조사대상자는 젊어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용노동을 시작하거나, 전과로 인해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용노동을 시작한 경우였다.

【집장인 집주인의 소개로 일용노동 시작】 (양○주, 남, 46세)

양씨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20세(1976년) 무렵에 우연히 집주인(양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벽돌공 집장이었다고 함)을 따라 나섰던 것을 계기로 건설일용노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집주인이 할 일 없으면 따라와 놀면 뭐하나 방세라도 벌어야지 않겠냐는 거야. 그 길로 집주인을 따라 나섰던 게 지금 이렇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지. 그런데 옆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나보다 많았어. 일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에 시멘트, 자갈, 모래를 삼으로 비비는 콘크리트 일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비계를 설치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지. 1981년부터 1년 동안, 1983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계공으로 가서 국제노가다도 해보고 영원한 직업이 되어버렸지. 예! 참!”

【전과】 (김○우, 남, 37세)

청소년 시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전과 4범이 된 김씨는 27세에 출소하여 이후 취직을 하려 해도 번번이 신원조회에서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집 배달이나 오토바이 택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간신히 택시운전기사로 살아가던 그가 2년 전 주식투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현재 4천만원이 넘는 카드빚을 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창동에 나와 중국집 배달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담배를 주워서 피울 땅정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간간이 스포츠센터 운전기사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이틀 나가기도 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일당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규직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일용노동을 하게 된 일용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용직을 일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직장 상사나 사용자 측과의 다툼,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직장을 퇴직하고 일용노동자의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퇴직후 일용노동】 (곽○현, 남, 41세)

곽씨는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용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돈벌이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일용노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일용노동자 생활 12년째다.

“리비아에서 돌아와 공장에 취업을 했죠. 그러나 월급이 30만원~40만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상황에서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용노동자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입이 저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1990년 동료들과 공장을 나와 일용노동을 시작했지요. 당시 한 달에 보통 60만원은 벌었어요.”

【더 많은 수입을 위해 퇴직후 일용노동】 (오○순, 여, 42세)

10여 년 전에 남편이 당뇨병으로 자리에 눕자,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의 딸과 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 오씨는 한 대학부속병원의 식당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였다. 그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잠깐 아르바이트로 하루 이틀 일한 적은 있었지만,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고 기능적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된 후에도 계속 일을 하였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남편의 월급도 삭감되고, 두 아이 사교육비를 감당하면서 작은 돈이나마 저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수입이었다. 이에 오씨는 상용직을 그만두고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하는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일용노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측과의 다툼] (안○근, 남, 41세)

프레스작업 도중에 눈을 다치게 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다툼이 생기고 이 와중에 안씨는 퇴직을 하였다.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IMF 당시에는 직장을 그만둔 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놀 수밖에 없었어요. 방황을 하면서 퇴직금 받은 것으로 5개월~6개월 정도 버텼지요. 그야말로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노동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3만원~4만원씩 당장 손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잡부로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회사 측의 권고사직] (김○희, 36세, 남)

1997년 찾아온 경제위기와 함께 다니던 직장이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고 인력감축을 단행하게 되었다. 김씨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비록 IMF 외환위기라고 하지만 당시에 32살로 젊었고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회사 측에서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 같아 경기도까지 내려가서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 (최○순, 여, 45세)

4남매 중 둘째로 고등학교 졸업 후 퇴계로 근처의 회사에서 사원생활을 하다가 21살부터 성수동의 공장에서 프레스와 용접일을 하였다. 여자로서 하기 힘든 일이지만, 10년 정도 공장에서 남자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였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1년 7월까지 간호사생활을 하면서 종합병원의 수술실에서 일하였다. 10년 동안 해왔던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 생활을 작년에 접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쉽게 되지 않자 음식점에서 2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은 공공근로와 파출소의 식당일 등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한 염증이 생기게 되었어.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병원을 떠나고 싶었지. 당시에도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살림에 내가 병원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쪼들릴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무튼 대책없이 병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2개월 동안은 하릴없이 놀 수밖에 없었어.”

일부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 혹은 장사를 하다가 벌이가 신통치 않아 그만두고 나서 오래 전에 그만둔 일용노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일용노동을 시작한 경우가 있었다.

[자영업을 그만두고 일용노동 시작] (노○준, 남, 43세)

현재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용접공 생활을 하고 있는 노씨는 중학교 중퇴 후 17세부터 인천의 작은 조선소에서 용접사의 보조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2년 후에 독립하여 일용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하고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정도 백령도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였고, 서울로 와서도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 후 아내는 오락실을 하면서 자신은 택시운전사, 중화요리집 배달원, 오토바이 택배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일용 용접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사업실패 이후 요리사로 일용노동 시작] (원○희, 남, 35세)

원씨는 4남매 중 장남으로 집안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 졸업 이후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한다는 생각으로 17살에 서울로 상경하였다. 원씨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 나이트클럽,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20살에 중국집 배달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틈 날 때마다 어깨너머로 요리기술을 익혀 5년 후 중화요리집을 열었다. 그러나 원씨는 장사가 여의치 못하게 되자 중화요리집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26살부터 지금까지 북창동 새벽인력시장에 나와 요리사 일자리를 구하면서 일용 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실패 이후 일용노동 시작] (문○일, 남, 49세)

문씨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호텔의 영업회계원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친분이 있었던 일본인 손님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7천만원의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그 후 직업훈련원에서 용접기술을 배워 현재까지 용접공으로 일용노동을 하고 있다.

“당시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이었어. 빚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배를 탈까 아니면 탄광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신문에서 직업훈련원 광고를 보고 용접기술을 배웠어. 30대 후반에 힘을 쓰는 일은 하기 어려웠지만, 용접은 손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배웠어.”

조사대상 여성 일용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 또는 별거를 하거나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노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 남편의 가정폭력] (서○순, 여, 49세)

서씨가 세 자녀 중 막내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시킨 상황에서 가족을 떠나 식당에서 일용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의 심각한 주사() 때문이었다. 26년 전(현재

28살인 큰 딸아이가 2살이던 때) 남편이 노름에 빠져 노름빚으로 두부공장을 날려버린 후 전에는 없었던 주사가 생기면서 서씨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늦게 오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옆집에 맡겼어.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살림살이를 부수고 술주정을 했어. 살림살이도 몇 번이나 새로 장만하고….”

그러던 1997년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듯 서울로 왔다. 서울에 와서 잠시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지만 곧 식당에 들어가 기식()하면서 일용노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병을 깨면서 위협하고, 나는 살기 위해 베란다를 뛰어내렸어.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잔디밭이었어. 그렇게 집을 빠져 나와 근처에 있는 동생 집으로 일주일 정도 피해 있었지. 오빠와 언니들은 그냥 도망가서 혼자 살라고 했어. 그러나 남편은 다시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각서까지 썼어. 그 일이 있은 후 두어 달은 술도 마시지 않고 나한테도 잘 했어.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어. 술을 다시 입에 대자 전과 똑같아졌어. 자식들도 모두 컸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웃 세 가지하고 돈 10만원 들고,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지.”

【이흔 : 남편의 외도】 (강○윤, 여, 49세)

강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흔을 하게 되면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서 일용노동을 시작하였다. 20년 전부터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 49세의 나이로 음식점에서 12시간의 노동을 견디기에는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주부습진 등 피부병을 심하게 앓아 설거지 같이 물이 묻는 것을 피해야 하므로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의 식사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시간이 늦어서 어머니를 찾아뵙기는 어렵겠네. 어머니는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자식 다섯 중에서 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가장 아프다고 하시지. 가족들 때문에 평생 일만하고 좋은 꼴도 못 보고… 서방도 없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고. 지금 26살이 된 내 딸아이는 전남편, 새엄마와 살고 있어. 간호사를 하고 있지. 한 달 전인가 딸아이와 전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딸아이한테 전화가 없네. 어미라고 제대로 해준 것도 있는데…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니 힘들게만 느껴져.”

【이흔 : 남편의 외도와 불성실】 (한○자, 여, 60세)

한씨는 외도를 일삼는 남편 대신에 두 아들을 맡아 기르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등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했다. 지금은 갑상선과 관절이 좋지 않아 주로 공공근로와 같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한 일을 하고 있다.

“IMF 당시에 음식점에 일하러 다니고 공장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식당일은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 공장일도 힘들지만, 식당일처럼 계속 서있지 않아도

되니까, 무릎이 아픈 나에게는 10시간이 넘는 작업이지만 공장일이 더 수월했어.”

(3) 가계상황

조사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통해 경제규모를 살펴보았다. 조사 당시 조사 대상자 가구의 월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2명, 200만원~300만원이 9명, 100만원~200만원이 4명, 100만원 미만이 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맞벌이를 하는 일용노동자는 남성 일용노동자 7명, 여성 일용노동자 3명이었다.¹⁾

그리고 소비항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비로 나타났다. 8명의 노동자들이 교육비가 소비항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4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자녀가 있는 일용노동자들은 대개 자녀 1인당 20만원~3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녀의 교육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신은 비록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들은 번듯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소득 300만원 이상】 (양○주, 남, 46세)

비계공인 양씨는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13만원을 받고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의 위험과 난이도 때문에 14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달에 260만원~300만원을 번다. 그리고 양씨의 아내가 유치원 셔틀버스의 안전요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원~60만원을 벌고 있다. 양씨 가구의 한 달 소비내역 가운데 식비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의 사교육비로 70만원~8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기타 건강보험료, 세금, 공과금을 합친 비용이 한 달에 20만원~3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

【가구 월소득 200만원~300만원】 (안○진, 남, 52세)

용접공인 안씨는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200만원 정도를 번다. 안씨의 아내도 IMF 구제금융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8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자신의 벌이가 줄어들자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달 50만

1) 숙련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월수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에 대한 조사시점이 4월~5월 중으로 일자리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사 당시, 숙련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대개 한 달에 약 20일~25일 정도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개는 동절기인 12월~2월은 약 5일~10일, 11월과 3월은 약 10일~15일 정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장마철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숙련 일용노동자라 할지라도 연봉 개념으로 환산하면 1,800만원~2,4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원 정도를 적금으로 은행에 넣고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한 달에 4만7천원을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5만5천원을 내고 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현재 대학생인 아들의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40만원 이상으로 소비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고 한다.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일을 하지 못해 그전에 저축해 놓은 돈을 600만원 찾아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가구 월소득 200만원~300만원】 (김○준, 남, 46세)

철근공인 김씨는 한 달에 평균 200만원 정도를 벌고, 아내가 파출부를 나가면서 50만원 정도를 번다. 그래서 자신과 아내가 버는 돈을 합하면 한 달 평균 250만원 이상은 된다. 하지만, 동절기에는 한 달에 거의 10일 정도 일하고 100여 만원밖에 벌 수 없다. 그럴 때는 식비를 줄이든지 해서 소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생활을 한다. 한 달에 50만원 저축을 하고, 술과 담배는 5년 전에 건강과 금전상의 이유로 끊었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으로 3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가구 월소득 100만원~200만원】 (곽○현, 남, 41세)

용접공인 곽씨는 15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1년 전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 약값으로 매달 25만원씩 나간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원비 20만원과 어린이집 회비 21만원, 건강보험료(3만원)와 전기·가스요금(3만원, 4만원), 세금 15만원 등 대략 70만원~80만원을 지출하고 생명보험 등으로 12만원 정도 내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 살림살이를 꾸려야 한다. 따로 적금을 들거나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다. IMF 구제금융 전에는 곽씨가 일해서 번 돈만으로도 저축이 가능할 정도였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병원에 함께 가야 하는 등 일을 많이 할 수 없다보니 여유가 없어졌다. 지난 3월에 부모님과 동생들이 100만원 정도 보내왔는데 생활비에 보태 썼다. 작년, 아내가 아픈 바람에 아내를 돌보느라 전여 일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회사원인 두 동생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김○중, 남, 36세)

전기공인 김씨는 5월, 한 달 소득이 100만원을 약간 넘었다. 6월 14일에 만났을 때 김씨는 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이를 정도 일을 나간 것을 제외하면, 6월 중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다. 온 식구가 김씨가 버는 10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100만원 가운데 생활비를 쓰고 나면 거의 남는 돈도 없고 저축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안○근, 남, 41세)

막노동을 하고 있는 안씨는 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의 수입 가운데 40만원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의 두 아이 학원비와 학습지 구독료로 내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의 숙제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많아서 없는 살림에 컴퓨터까지도 장만하였다.

“컴퓨터를 6개월 할부로 샀어요. 지금은 할부금을 다 갚았지만… 아이들이 컴퓨터로 숙제하려면 PC방에 가야 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샀죠. 다른 아이들은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쓰는 것도 자유롭나요? 눈치보이지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내 세대나 자식의 세대나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깨지고 힘들어도 자식들은 밀어주어야 되니까요. 다행히도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노력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힘들게 품을 팔아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내도 일을 해서 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강○윤, 여, 49세)

강씨는 4월초에 전단지 배포하며 4시간 일하고 2만원~2만5천원 받고 2주 정도 일하였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 8만원, 보험료(저축성 암 보험료로 한 달에 1만2천원, 1만1천원, 5만3천원 등 총 7만6천원) 등을 포함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을 포함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간다. 한 달에 적어도 70만원 이상을 벌어야 생활이 유지된다. 생활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아껴서 쓰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5월부터 90만원을 받으며 월급제로 파출부를 하기로 되어 있어, 생활비로 3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 외에는 빚은 없다.

(4) 주거상황

조사대상자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주택 5명, 전세 12명(공공임대주택 1명 포함), 보증부월세 2명(영구임대주택 1명 포함), 월세 1명으로 나타났다. 전세거주자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인 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일용노동자는 모두 숙련 일용노동자로 연립주택에서 3명이, 단독주택에서 2명이 살고 있었으며, 주택가격은 모두 1억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가] (오○순, 여, 42세)

“1996년에 지금의 집을 장만했어요. 1984년에 결혼해서 12년만에 지금 살고 있는 화곡동의 방 3칸짜리 연립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6천8백만원에 샀죠. 그 다음에 IMF

가 닥쳤잖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전세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집을 넓혀서 이사하고 싶지만 월한다고 다 되나요. 지금은 그럴 형편도 못되고….”

【전세】 (김○춘, 여, 49세)

김씨는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천5백만원을 올리겠다고 했으나, 사정을 해서 1천만원만 더 주고 살고 있다. 응자를 얻어 1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다.

“15년 전, 1987년 즈음에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가면서 미아리에다 겨우 집을 장만했어. 연립주택 3층에 25평으로 3천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는데, 좋았어. 그때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어.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무튼 그런 집이었는데, 내가 모르게 남편이 그 집을 담보로 사채를 얻어다 쓴 것이야. 전혀 몰랐어. 그렇게 1998년에 집이 넘어가고, 석계역 근처의 차고방으로 옮면서 이사를 갔어. 차고로 쓴던 곳에 방을 만든 것이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방 한 칸에 아들과 딸, 나, 이렇게 3명이 살았어. 내 집에 살다가 1,600만원 전세로 남의 집에 살기 시작한 것이지. 겨울에는 떡볶이, 오뎅, 순대를, 여름에는 포도 등 과일을 트럭에싣고 다니면서 팔았어. 그리고 생선장사도 하고, 공공근로도 다니면서 아이들이 준 돈을 모아서 적금도 들고, 그렇게 해서 면목동에 1,900만원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중화동에 3,000만원 전세로 옮길 수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1,5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선 1,000만원을 응자받아서 주었어. 집주인은 나머지는 1년 후에 더 달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벌어야지.”

【다세대주택 반지하의 소액보증금 전세】 (문○일, 남, 49세)

문씨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전세로 1,700만원에 살고 있다. 낡은 배관과 샤워시설은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해서 쓰고 있다.

“올해 4월 27일에 전세로 집을 옮겨야 했어. 같은 동네 교우()의 소개로 전에 살던 집에서 1,200만원을 받고, 500만원을 보태서 반지하 1,700만원에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었어. 내 입장에서는 가지고 따질 여유가 없었고, 비만 가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방도 생각보다 넓어서 좋아. 500만원은 집사람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만큼 재산도 없고 보증을 서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은행돈 빌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전에 동사무소의 보증으로 전세자금 750만원을 응자받았는데, 그 돈이 빚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1,250만원이 부채로 남아 있어.”

【월세】 (서○순, 여, 49세)

서씨는 신월동에서 월세 20만원에 살고 있다.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남편을 피해서 1997년 서울에 올라왔을 당시에는 며칠 동안은 친척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눈치가

보여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지금은 식당에서 나와서 방 1칸짜리 월세를 구해서 혼자 살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조○행, 남, 34세)

조씨는 14평형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천시 오정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1996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월세로 살았지만, 지금은 전세로 전환해서 살고 있다.

“서 있으면 앓고 싶고, 앓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곳 임대아파트에 왔을 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내 평생에 아파트에서 언제 살아보나 했는데…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좀 좁아 보여요. 하지만 당분간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갖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지만, 무엇보다도 이 근처에서 전세를 살려면 6천만원~7천만원은 주어야 하거든요.”

조사대상자 중에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전세로 옮긴 사람이 2명 있었다.

【자가에서 전세로】 (김○희, 남, 36세)

김씨는 IMF 구제금융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조개구이점을 열었다. 하지만 2천만 원 정도 손해보게 되고, 결국 25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가게 된다.

“그 동안 저축했던 돈(700만원 정도)과 퇴직금(600만원 정도), 그리고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1999년 초에 조개구이점을 차렸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동부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막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에 조개구이점이 인기가 있었어요. 적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정도 사업이면 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같이 장사하면서 저는 막일도 틈틈이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5개월~6개월 정도 장사를 했나, 결국에는 망해서 2천만원 정도 손해만 보게 되고 가게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동안 살고 있었던 성수동의 집을 팔았죠. 1994년에 알뜰살뜰 모아서 6천4백만원에 장만한 집이었는데, 5년만에 지금 살고 있는 자양동의 보증금 4천8백만원짜리 전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은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어요.”

【자가에서 전세로】 (곽○현, 남, 41세)

곽씨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외에 따로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02년 초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 형편이어서 아파트를 팔고,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했다. 곽씨는 모아 놓은 돈도 없었고, 동절기라 벌이도 시원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7년 전에 부모님의 도움(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부모님의 돈으로 산 것이라

고 함)을 받아서 인천에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하지만 아파트에서 살 형편이 못되어 세를 주었고, 정작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채 군자동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아내의 입원비와 약값으로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바닥이 났었고 전세보증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어요.”

2) 유형화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일용노동자를 우선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남성은 기능숙련 정도, 여성은 건강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남성 일용노동시장에서 기능숙련 정도와 여성 일용노동시장에서의 건강상태는 구직의 용이성, 임금수준, 노동의 시간 및 강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이유는 일용노동시장의 특성상 여성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종사하고 있는 일이 기능의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임금을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조금 덜 주는 정도여서 남성 일용노동시장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표 III-2>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유형화

구 分		유 형	비 고
남 성	숙 련	I	특정 기능이 있음. 높은 일당
	비숙련	II	특정 기능이 없음. 낮은 일당
여 성	건강 양호	III	30대 ~ 40대, 상대적으로 높은 일당
	건강에 문제	IV	50대 ~ 60대, 상대적으로 낮은 일당

유형별로 간단히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남성 숙련 일용노동자이다. 이 유형은 비교적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당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숙련공에 비해 높은 일당인 8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일용노동자들은 주로 비공식적 인적 유대를 활용하여 구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일취업센터나 무료·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인맥(주로, 사장이나 십장 또는 동료)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과는 구직을 위한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고, 동료들

간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일을 제안할 정도(“○○일이 있으니 같이 합시다”)로 적극적이고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유형 I : 인적 네트워크와 기능】 (곽○현, 남, 41세)

“일을 잘 해주면 연락이라도 한 번 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락을 안 하지요. 한번 일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작업장에서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죠.”

이 유형에 속한 일용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성과 또는 평가에 따라 다음 일자리를 구하게 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일에 대한 비교적 높은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

【유형 I : 높은 책임감과 직업의식】 (문○일, 남, 49세)

문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인 30대 후반에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용접기술을 배워 현재까지 10년 넘게 일용노동을 하고 있다. 용접을 배울 당시에 아내가 파출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문씨는 직업훈련원에서 용접기술을 열심히 익혔다. 문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작업복을 자신이 직접 빨지 않고 아내에게 갖다주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두 딸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우스갯소리지만 숙달된 도둑은 도둑질 할 때 서랍을 위에서부터 열지 않고 아래부터 열다고 해. 신속하게 털기 위해서라나. 나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용접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할 때는 항상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효율적이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

유형Ⅱ는 남성 비숙련 일용노동자이다. 이 유형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잡부 수준의 일을 하는 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당은 평균 6만원 수준이다. 이 유형에 속한 일용노동자들은 비공식적 인적유대를 통하여 일을 하는 숙련 일용노동자와는 달리 공식적인 취업알선조직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유형 I에 속한 일용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힘이 더 많이 드는 일을 하고, 작업준비 및 현장정리 등의 일을 하는 등 일하는 시간도 비교적 길다.

【유형Ⅱ : 기능이 없음】 (안○근, 남, 41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사장에서 잡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공사장, 하루는 공장의 창고 등 직업소개소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

의 종류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힘들고 피곤한 날에는 직업소개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죠. 일단 지금은 직업소개소에 나가면 일은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요? 일하다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서로 일자리를 소개해 줄 만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유료 직업소개소나 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유형Ⅱ : 공식적 취업알선조직을 활용한 구직활동】 (김○희, 남, 36세)

“IMF 때 공장이 용인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을 감축했죠. 그래서 저도 퇴직을 하게 되고 일용노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료 직업소개소와 동부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고 일을 했어요. 전에는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주로 유료 직업소개소나 동부일일취업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5년 정도 일용노동을 하다가 보니 요즘 들어서 전에 일을 해줬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유형Ⅲ은 건강한 여성 일용노동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일용노동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30대~40대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장시간의 노동을 견딜 수 있어 사업주가 선호하기 때문에 유형Ⅳ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1개월 이상 임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유형Ⅲ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김○자, 여, 43세)

문래동 근처의 음식점에서 찬모(음식점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여성을 말함)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월 135만원을 받는다. 지금 김씨가 일하고 있는 음식점은 일요일마다 쉬는데,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다른 음식점의 경우에 찬모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16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김씨는 하루 12시간 넘게 음식점 주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식사 후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다음에 설거지와 빨래를 한 후, 오전 10시까지 음식점에 출근해 반찬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11시 20분에 새참을 먹고, 오후 3시쯤에 손님들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죠. 저녁식사는 손님이 많으면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저녁 10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퇴근을 하죠. 집에 들어가면 11시 정도 될 거예요. 힘들지요.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나이 들면 그만해야 하죠.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벌어야지요.”

【유형Ⅲ : 장시간 노동 가능】 (오○순, 여, 42세)

“지금 일하고 있는 음식점에 오기 전에 9개월 정도 일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보통 12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나면 거의 탈진상태였죠.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받았는데, 다른 곳에 비해 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라서 일을 했어요.”

유형IV는 건강하지 못한 여성 일용노동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일용노동자는 50대~60대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12시간 가까이 되는 장시간의 노동을 견디기에는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다. 건강 때문에 보수가 비교적 많은 식당에서 일하지 못하고, 공공근로나 파출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전일제보다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유형IV : 체력적 부담】 (강○윤, 여, 49세)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강씨는 “한 시간 정도 걷는 것은 괜찮겠지만, 4시간을 걸어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고 힘들다. 4시간 전단지를 돌리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말한다.

2.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1) 구직활동

(1) 주요 구직경로

일용노동자들마다 다양한 구직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이들의 주요 구직경로는 크게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와 공식적 취업알선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남성 숙련 일용노동자는 주로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통해서, 남성 비숙련 일용노동자와 여성 일용노동자는 주로 공식적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구제금융은 일용노동자들의 기준 구직경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인해 일용노동자들은 다양한 구직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IMF 구제금융 전에는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통한 상당히 안정적인 구직경로를 갖고 있던 숙련 일용노동자들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료·무료 직업소개소와 같은 공식적인 취업알선기관을 찾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거의 모든 일용노동자들에게 있어 구직경로는 IMF 구제금융을 기준으로 많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맥을 활용한 일정한 구직경로

조사대상 일용노동자 가운데 숙련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IMF 구제금융과 관계없이 거의 모두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IMF 구제금융 당시의 구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일용노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 등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십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경기가 좋지 않아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그들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십장 또는 사장, 동료 등)을 통해 일을 구했고, 그렇게 해야 그들의 기능을 살려 일을 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가 형성된 일용노동자들은 굳이 유료 직업소개소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인맥을 활용한 구직】(양○주, 남, 46세)

26년의 일용노동 경력을 가진 비계공 양씨는 1985년부터 인맥을 통하여나 창신동 새벽 인력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는 아예 가지 않아. 기본 적도 없고, 그곳에 가도 우리들 같은 비계공이 하는 일은 있지도 않아. 직업소개소는 잡부들이나 나가지, 자기 전문기술이 있는 기능공들은 그곳에 가봤자 일도 못 구해. 정 일이 없거나 몇 개월째 아무 일도 못해서 5만원~6만원이라도 벌겠다면 모를까. 나는 IMF 때에도 직업소개소에는 가지 않았어.”

【인맥을 활용한 구직】(안○진, 남, 52세)

안씨가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5년부터 철근조립공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IMF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하거나 어디로 가서 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였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어. 저녁에 술 한 잔하면서 지금 며칠 놀고 있는데 하면, 일자리를 바로 소개해 주거나 다음 날 연락이 와. 인맥이 재산이지.”

【인맥을 활용한 구직】(원○희, 남, 35세)

북창동 인력시장에서 중화요리집 주방장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원준희씨는 오히려 중화요리집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상점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구하고 있다.

“북창동 인력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중화요리 재료상을 통해서 일을 소개받는 일이 더 많아요. 특히 주방장같은 일자리는 더욱 그렇죠. 재료상도 재료를 파는 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중화요리집 주인들도 좋아하게 되고, 재료상 주인들도 그들을 단골로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주방장들도 그 재료상의 물건을 구입해서 요리를 하게 되니까 서로 좋은 것이죠. 당연히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에 대해 소개료같은 것은 받지 않아요. 사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인맥을 통한 구직경로 회복

IMF 구제금융 전에는 동료나 십장 등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통해 일을 구해 오다가,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공식적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고, IMF 구제금융 졸업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용노동자들도 있었다.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절대적인 감소로 공식적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였지만, 인적 유대가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전에는 숙련 일용노동자들 가운데 유료 직업소개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주로 십장 또는 사장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IMF 구제금융이 일용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을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공식적 취업알선기관 이용] (곽○현, 남, 41세)

“IMF 전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자리가 생기면 동료나 아는 사람들이 연결시켜 줘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에게 일자리가 들어와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어 일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소개시켜 주곤 해요. 하지만 IMF 당시에는 워낙 일을 구할 수 없어서 유료 직업소개소에 나가 보기 도 했어요. 그나마 운이 좋아야 용접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일이 없기는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는 다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기존 구직경로의 소멸

숙련 일용노동자 가운데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처가 문을 닫게 되면서 동시에 비공식적 유대관계가 사라지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일용노동자도 있었다. IMF 구제금융 전의 주요 구직경로였던 비공식적 유대관계가 경기침체로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공식적 취업알선기관에 의지하여 겨우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신의 기능은 전혀 살릴 수 없이 막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비공식적 유대관계의 소멸] (김○중, 남, 36세)

전자부품회사에서 퇴직한 후 1995년부터 일용 전기공으로 일을 해 온 김씨는 자신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하남시의 정수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저에게 일을 주면서 거래하던 업체들이 IMF 때 돈이 들지 않자,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일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지요. 결국 일거리를 소개시켜 주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계속 전기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직업소개소와 일일취업센터에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막노동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공식적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구직

조사대상 일용노동자 가운데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이 일용노동자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IMF 구제금융 전에는 일용노동을 해 본 경험이 없

었기 때문에 주로 공식적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실직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은 숙련 일용노동자들의 구직경로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인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유료 직업소개소와 노동부 산하의 일일취업센터 등 공식적인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적 취업알선기관 이용】(안○근, 남, 41세)

안씨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한 후에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일용노동을 하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관련 사항을 알아보다가 일일취업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부일일취업센터에 나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지요. 일용노동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일취업센터와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일자리를 알아봤지요.”

【공식적 취업알선기관 이용】(김○희, 남, 36세)

1998년 다니던 회사의 경기도 이전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김씨는 그 후로 지금까지 유료 직업소개소와 서울동부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30대 초반에 아직은 젊으니까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그만 두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유료 직업소개소나 지역정보신문의 구인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일을 나갔어요. 퇴직 직후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다닐 때에는 동부일일취업센터와 같은 구직기관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IMF 구제금융과 관계없이 조사대상 여성 일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만 구직을 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용노동자들에게 있어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또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구직경로는 유료 직업소개소이며,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역정보신문을 통해서 일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지역신문에 나온 구인광고만으로 일자리를 찾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결국,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주로 유료 직업소개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료 직업소개소 이용】(김○춘, 여, 49세)

남편의 빚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나와야 했던 김씨는 전세방으로 옮긴 후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다. 김씨는 서울시내에 안 가본 식당이 없을 정도로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구해 주는 대로 나갔다.

【유료 직업소개소 이용】 (강○윤, 여, 49세)

강씨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구하게 된 것은 20년 전 남편과 29살에 이혼을 한 이후이다. 주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구했던 강씨는 그 당시에 알게 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현재까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다른 유료 직업소개소에도 몇 번 가봤지만, 지금 강씨가 이용하는 직업소개소만큼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곳은 없었다.

【유료 직업소개소 이용】 (서○순, 여, 49세)

남편의 폭력을 피해 5년 전인 1997년 서울로 올라온 서씨는 친척의 소개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알게 되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음식점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방을 구해서 혼자 살면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섯 군데의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모두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구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현재 숙련 일용노동자들은 IMF 구제금융 전에 일자리를 구했던 것과 같이 주로 동료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한 퇴직자 및 실직자인 비숙련 일용노동자와 여성 일용노동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구직활동을 유료 직업소개소에 의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비공식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만큼 일에 대한 경력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또한 미숙하기 때문이다.

(2) 직업소개료

IMF 구제금융 당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의 일일취업센터는 구직등록을 하면 무료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 무료 직업소개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역시 일용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지만, 직업소개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이후 일용노동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소개료를 받으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제Ⅱ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료 직업소개소는 취업알선을 하면서 일용노동자에게 4% 이하의 직업소개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다.

【부담스러운 직업소개료】 (이○호, 남, 42세)

“20대~30대 때에 잠깐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당 일을 다닌 적이 있지만, 1998년 건설일용노동조합의 무료취업알선센터를 알고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 후

부터 유료 직업소개소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전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을 때에도 일당에서 10%씩 떼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부담스러운 직업소개료】(최○순, 여, 45세)

“지역정보신문의 구인·구직란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보기도 했었고, 유료 직업소개소에도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료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료로 임금의 10%는 주어야 하는 것이 마치 돈을 강탈당하는 것 같아서 직업소개소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유료 직업소개소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여성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회비로 직업소개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5만원】(오○순, 여, 42세)

IMF 외환위기로 인해 공무원이던 남편의 월급이 삭감되면서 음식점에서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오씨는 유료 직업소개소 2군데~3군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IMF 당시부터 직업소개소에 나와서 일을 구했어요. 1년 회비 5만원만 내면 직업소개소 측에서 일자리를 계속 소개시켜 주어요. 소개료 5만원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일을 그만두고 1년 안에 직업소개소에 가면 다시 일을 구해 주어요. 그래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식당에서 일을 구하는 아줌마들 대부분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지요.”

【6개월 회비 6만원】(김○춘, 여, 49세)

김씨는 IMF 경제위기 전인 1997년, 남편의 사채 때문에 미아동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김씨는 유료 직업소개소에 나가서 일을 구했는데, 그때 6개월에 회비가 6만원이었다. 6개월 동안 직업소개소에서는 김씨에게 일을 꾸준히 소개해 주었는데,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남성 일용노동자 경우에는 일당의 10%를 직업소개료를 떼이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남성 일용노동자들은 일당의 10%를 직업소개료로 내고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료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임의 대로 정한 직업소개료를 구직자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당의 10%】(김○준, 남, 46세)

철근공인 김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지만, 일 자체가 줄어드는 동절기에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철근관련 일을 구한다.

“지난 겨울에는 지역정보지를 보고 10군데가 넘는 직업소개소에 내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철근일이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했지. 그래서 연락이 오면 일을 나가곤 했지. 소개비로 일당의 10%를 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일이 없으니 할 수 없지. 보통 내 일당이 10만원 정도 하니까 1만원을 직업소개소에다 주는 거지.”

【임의대로 정한 직업소개료 강요】(김○중, 남, 3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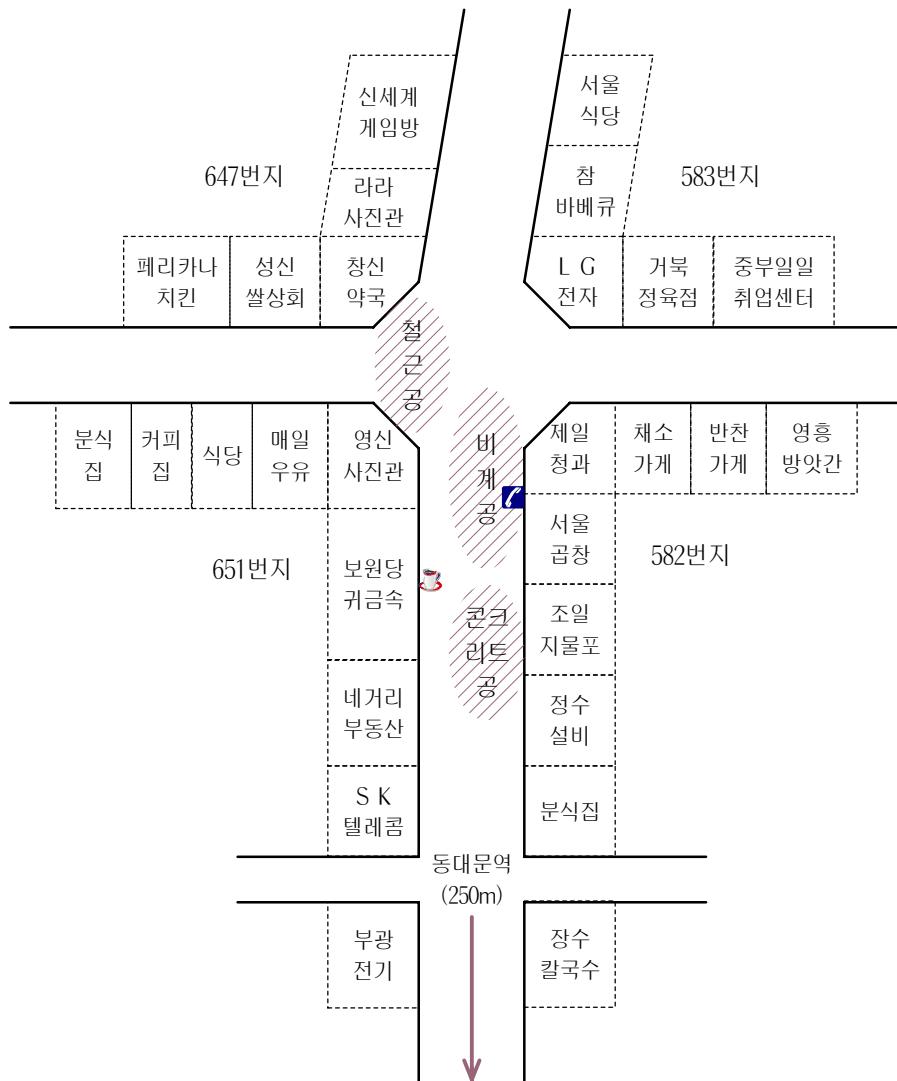
전기공인 김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했다. 하지만 등록내용을 보고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제의하는 직업소개소는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

“한 번은 인터넷에 올린 제 경력과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어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로 20만원을 선불로 내고 월급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제의하면서, 대신 월급은 15일 후에 주겠다고 했어요.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더군다나 15일 후에 월급은 받는다는 것은 직업소개소의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3) 구직공간

새벽 인력시장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1번 출구를 나와 술집과 음식점이 즐비한 넓은 길을 따라서 25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재래시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매일 새벽 5시~6시 사이에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구직·구인을 위한 새벽 인력시장이 열린다. 창신동 새벽 인력시장 근처에는 서울중부일일취업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새벽 인력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평범하고 작은 재래시장의 모습이다. 실제로 오전 6시 30분만 되면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골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연 인력시장이 열렸던 곳인가 싶을 정도이다. 약 1시간 30분 동안에 400명이 넘는 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몰려왔다가 순식간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공간이다. 특히 인력시장이 거의 끝나는 오전 6시~6시 30분 사이에는 200명이 넘는 일용노동자들이 일을 구한 다음 승합차에 나눠 타고 노동현장으로 떠날 정도로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린다.



<그림 III-1> 창신동의 새벽 인력시장

창신동 새벽 인력시장은 비계, 철근, 콘크리트와 관련된 기능이 있는 숙련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다. 폭 7m와 5m의 교차로를 따라 일용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종에 따라 무리를 지어 커피 한 잔과 담배를 피워 물고 서성거리고 있으면, 구인자(대개 십장)가 알아서 찾아와 일할 장소와 보수를 제시하고, 구직자가 그 조건에 동의하면 잠시 후 승합차에 나눠 타고 작업현장으로 떠나게 된다.

[창신동 새벽인력시장] (양○주, 남, 46세)

“창신동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비계공, 저 사람은 철근공, 저 사람은 콘크리트공 등 대충은 직종이 뭔지는 다 알 수 있어. 우리는 주로 다음날 할 일을 정하고 나오지. 저 음 여기 와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 창신동에서 일을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누가 누구인지 아니까 만약 일을 잘 못하고 요령만 부린다고 생각되면, 다음에는 그 사람과 일을 하지 않지.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 기술이 없는 잡부들은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필요할 때 부르지, 여기서 구하지는 않아.”

한편 남대문시장 맞은 편에 자리잡고 있는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은 하절기에는 6시 정도에, 동절기에는 7시 정도에 시작된다. 창신동 새벽인력시장보다 늦은 시간인 오전 8시~9시에 가장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고 오전 9시가 넘어가면 구직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뜨면서 북창동 인력시장도 거의 파장을 맞게 된다.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은 다른 인력시장과는 달리 주로 중화요리집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구인·구직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인력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허가 개인 직업소개업자들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온 중화요리집 주인들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온 일용노동자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인력시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 커피숍을 직업소개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커피숍에서 구인자들(중화요리집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직업소개업자들은 커피숍과 인력시장을 오가면서 구직자들(일용노동자)을 소개시켜 주고 중화요리집 주인에게서 직업소개료를 받는다.

[북창동 인력시장의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김○우, 남, 37세)

“나처럼 배달원은 북창동에 나오면 일단 일은 할 수 있어요. 주방장이나 주방보조(흔히 ‘라면’이라고 불리는 면을 뽑는 사람을 말함)는 오전 7시까지는 나와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배달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나와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주방장과 주방보조는 사람이 남아돌아요. 북창동에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 100명 중에 배달은 3명도 안 될 걸요. 그래서 주방장과 주방보조는 직업소개업자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배달원은 직업소개업자들에게 15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직업소개업자가 배달할 사람을 구하는 소개비로 구인자(중화요리집 주인)에게 20만원을 요구해도 줄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소개비를 많이 받고 가도 일하는 사람의 일당 8만 원 정도지요. 직업소개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소개업자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죠. 자기가 소개해 준 중국집에서 한 달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빼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한 달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집을 그만둬도 소개비를 물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곳에 소개시켜주면서 직업소개업자는 고스란히 소개비를 또 챙기게 되죠. 결국 사람을 또 구하기 위해서 중국집 주인은 북창동을 찾게 되고, 그 직업소개업자에게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게 되요. 중국집 주인만 물먹는 거죠”

특히, 이곳은 중화요리집에 취업하려는 재중동포와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남대문로 지하상가 3번 출구를 나오는 순간 1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있는 장면이 들어오면서, 인력시장의 입구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중동포와 중국인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창신동 새벽 인력시장의 경우 일용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무리를 지어 있다면, 북창동 새벽인력시장은 구직자들이 가진 기능이 아닌 국적과 민족에 따라 한국인, 재중동포, 중국인으로 무리를 지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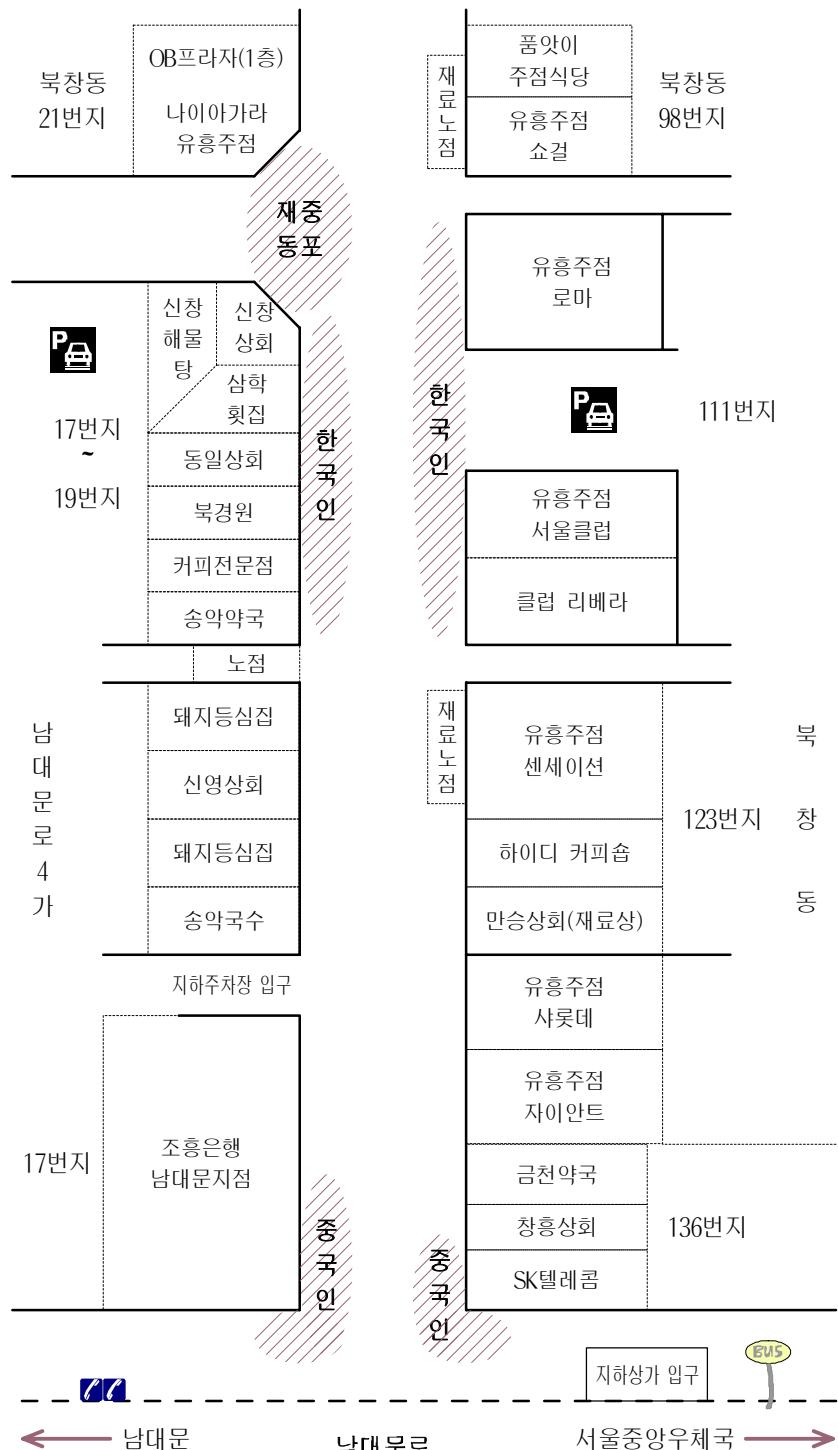
북창동의 새벽 인력시장은 거의 매일 400명이 넘는 구직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서성거리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북창동 인력시장에서의 구직난 : 2002년 3월】 (원○희, 남, 35세)

“오늘 하루도 여탕이에요. 이런 날에는 꼭 술을 마셔야 해요. 집에 목돈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북창동 인력시장에서의 구직난 : 2002년 6월】 (김○우, 남, 37세)

“요즘에는 이곳에 오는 재중동포와 중국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재중동포와 중국인들 보다 우리 나라 구직자들이 많았고 모여있는 구역도 딱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 입구 쪽에 모여있던 재중동포와 중국인들이 여기 사거리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중동포와 중국인들이 더 늘어나서 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III-2> 북창동의 새벽 인력시장

한편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온 일용노동자들이 느끼는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다.

【북창동 인력시장에 대한 느낌】(김○우, 남, 37세)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구하러 오는 사람,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 등) 사람들은 많지만, 벼려진 장소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있고,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마나 경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술에 취해 해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주방장이라고 온 사람이 실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친다면 퇴출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력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력있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소개를 받아서 가지 이곳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게 된 것이지요. 주인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취업상담소 설치, 무료 건강검진 등 공공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공공에 대한 건의사항】(김○우, 남, 37세)

“북창동과 같은 인력시장 근처에는 노동부 또는 서울시에서 취업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주었으면 해요. 구직자에게 소개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고… 서울시나 노동부가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곳 북창동에 오는 사람들은 술과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과 등의 전문의가 와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유료 직업소개소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협회의 소개를 받아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단새 정도 방문하여 직원들과 여성구직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분위기도 살펴보았다. 목동에 위치한 이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강서구와 양천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었으며,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소개소와 달리 여성 일용노동자들의 구직업무를 20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다. 소장과 3명의 직업상담원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구인을 요구한 음식점이나 업체에 여성 구직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여성 구직자들은 주로 오전 9시에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선착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일 40명이 넘는 여성들이 오전 8시부터 이 곳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 유료 직업소개소는 방문한 거의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일용노동자 중에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불만 및 개선요구 사항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개선요구] (오○순, 여, 42세)

“이런 곳(직업소개소)에 나온 사람들은 많이 배웠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소개소 측에서는 아무래도 업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개시켜 준 일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일을 그만두고 나올 때가 더러 있어요. 물론 사람들을 많이 소개시켜 줄수록 직업소개소 측은 좋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적성이나 작업환경에 대하여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직업소개소에 대한 불만] (곽○현, 남, 41세)

“IMF 당시에 몇 번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나갔는데, 그때는 직업소개소 측이 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용접일이고, 장소와 전화번호 정도만 알려주었어요. 직업소개소 측에서도 용접일을 소개시켜 주기는 하지만, 제가 용접을 할 줄 안다는 정도밖에 모르지, 제 용접기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단지 일자리 소개를 많이 해서 직업소개료만 쟁기려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조합의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일을 나갈 때는 일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모두 다 물어볼 수 있었어요.”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의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1998년 9월에 무료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은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는 건설 현장의 구인·구직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체불임금 등의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각종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1998년 12월부터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실업대책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 전국의 29개 지역을 연결하여 일용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는 35,000명 이상의 구직자 DB 와 2,000개소 이상의 구인처 DB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이 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는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169명의 상담인력, 전국을 연결하는 인트라넷의 구성 등 지방정부 취업정보은행 및 유료 직업소개기관과 비교할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는 이미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권역별 취업알선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일일취업센터 등과 같은 공공 직업안정기관과의 협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하는 등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표 III-3>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취업알선			노동 법률상담
	건설현장 취업	공공근로 등	소 계	
1999년	99,938	372,120	472,058	1,734
2000년	255,198	296,166	551,364	2,575
2001년	159,209	110,396	269,605	1,732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 2002.

영등포구 신길2동에 소재한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용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무료취업알선센터 측에 따르면 취업알선 업종을 설계직, 사무·기술직, 현장기능직 등 주요 3개 부류로 전문화하여 맞춤알선을 하고 있었지만, 주로 일용노동자들에게 현장기능직을 소개하고 있었다.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한 무료취업알선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직자이면서 조합원이기도 한 그들은 조합이 체계적인 구직·구인관리와 일자리 소개 이외에 일용노동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체계적인 구직·구인관리 필요】 (곽○연, 남, 41세)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조합활동을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무료로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조합에 오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합은 직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로 조합에 나오는 사람 위주로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도 사실이며, 일자리를 받아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계속 일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하는 폐단

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배분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많은 일용노동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조합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무료취업알선센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요. 조합 자체의 홍보보다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소개로 조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극적인 무료취업알선센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용노동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조○행, 남, 34세)

“예전에 부천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에 있었을 때에는 지금의 조합처럼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일은 없었죠. 아무튼 조합원들도 얼마 없었고, 조합이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어서 조합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곳에 나오는 조합원 혹은 일용노동자들은 열에 아홉은 노동조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취업과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인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취업, 일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일이 많아요. 건설일용노동조합을 더 많은 일용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무료취업알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용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고충을 상담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일용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일용노동조합은 일용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하죠.”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한 기능이 없어 인맥을 통해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일당의 10%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하는 유료 직업소개소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일일취업센터에서 소개시켜주는 일자리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일자리와 비교할 때, 일당은 적지만 노동강도가 약하거나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래서 이 곳을 이용하는 일용노동자들은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때에는 일일취업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일취업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IMF 구제금융기와 그 후의 이용경험】(김○중, 남, 36세)

전기공인 김씨는 1998년 12월부터 동부일일취업센터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였다.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여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담배피고 한숨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매일 70명~80명의 구직희망자들이 나와서 저쪽 대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장기를 두거나, 잠을 자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컵라면을 먹었어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모두 일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집에 가면 할 일도 없고, 혹시나 일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 하며 하루 종일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일일취업센터에서는 ‘일당 일부 쓰실 분’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변의 공장, 식당, 사무실 등 곳곳에 부쳐서 이곳에 오는 구직희망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당시 여기 담당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직도 그분들이 생각나요. 한참 사람이 많을 때에는 5백명~6백명 정도의 구직희망자들이 서로 일을 받기 위해 일일취업센터 앞에서 장사전을 이룬 적도 있었어요. 선착순으로 일자리를 소개시켜줬으니까요. 그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곳 주변의 여관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집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와서 줄을 섰어요.”

그러나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일일취업센터에서의 구직활동에 만족했지만,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일취업센터의 활동을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 일일취업센터에 연락을 주는 사업체가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소개해 주는 일자리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개시켜 주는 일은 일당이 너무 작아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나가면 일당 6만원~7만원 받을 수 있는 일도 여기 소개로 나가면 일당 4만원~5만원 밖에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도 일당을 적게 받으니,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아진 시기에는 누가 여기 와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겠어요?”

【이용 경험】 (안○근, 남, 41세)

“동부일일취업센터에 나오기 시작한 1998년 당시에는 사람은 많았는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일취업센터를 이용한 초기에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항상 20명~30명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2000년 봄쯤인 것 같아요. 일일취업센터에서 소개하는 일자리는 가끔 7만원짜리 일당도 있지만 보통 5만원이라서 그럴 거예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일당이 3만원~4만원이었지요. 얼마 전(6월초)에도 일일취업센터의 소개로 아파트의 계단 물청소를 일당 5만원에 했지만, 유료 직업소개소에서는 일당 6만원~7만원은 받아야 소개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2) 임 금

(1) 임금수준

조사대상 일용노동자 대부분이 IMF 구제금융기에는 그 전이나 후보다 일당이

적었으며, 경기침체로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었다.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일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숙련 일용근로자들마저도 임금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일당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일당은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2001년 상반기부터 거의 IMF 구제금융 전 수준의 임금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임금의 하락과 회복】(김○준, 남, 46세)

“철근공인데, IMF 전에는 지금 임금처럼 9만원~10만원 정도 받았어. IMF가 터지면서 6만5천원까지 내려갔고, 차츰차츰 올라 7만원, 8만원, 그리고 지금은 10만원까지 받고 있어. 작년 말부터 10만원으로 올랐지.”

【임금의 하락과 회복】(양○주, 남, 46세)

“IMF 때에는 현금이 잘 돌지 않아 공사현장도 줄었어. 지금이야 일당이 13만원~14만원이지만, 당시에는 9만원~10만원으로 떨어졌어. 창신동(새벽 인력시장)에 간간이 나와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한 건설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일당 9만원을 받으면서 비계작업을 하기도 했어. 한 달에 평균 25일~27일 정도 일하고 220만원~240만원을 받았어. 작년 초부터 일당 12만원을 받다가, 올 4월부터 임금이 1만원 정도 올라서 13만원을 받고 있어.”

【임금의 하락과 회복】(안○진, 남, 52세)

“용접을 하고 있는데, IMF 당시에는 일당이 6만원 정도 했지. 한 달에 100만원 벌면 많이 벌었다고들 했으니까. 100만원도 못 벌던 달도 많았고… 당시에는 잘 벌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벌었을 거야. 지금은 못해도 한 달에 200만원은 벌고 있지. 작년 초부터 임금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어. 작년 말에는 IMF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지. 지난 겨울만해도 일당 7만원~8만원 정도였는데, 불과 3개월~4개월이 지난 지금 9만원으로 올랐잖아.”

일용노동자들의 일당 상승과 관련하여 IMF 구제금융 졸업 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치솟는다는 언론보도²⁾와는 달리 조사 결과, 일용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일당은 IMF 구제금융 전보다 1만원~2만원 정도 상승했을 뿐이었다. 단기간에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작업이나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

2) 매일경제신문, 2002년 4월 17일자, “하루 20만원 쥐도 일꾼 없다” 참조.

를 제외하면, 언론보도와 같이 많은 일당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작업】 (곽○현, 남, 41세)

2002년 3월에 비해 4월에 들어서 건설일용노동조합에는 노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주위의 동료들은 일당 8만5천원에서 9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한다. 특수용접인 아르곤용접은 10만원~11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한다.

“특수용접은 일반용접에 비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당 20만원짜리 용접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도시가스 배관 등을 용접하는 경우로 일 자체도 그리 많지 않고 몇몇 극소수 용접공에게 해당하는 경우죠. 아무리 경기가 좋고 인력난이 심해도 모두가 그런 보수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위험하거나 야간작업】 (안○진, 남, 52세)

“IMF 당시 그러니까 1998년에도 하루 일당 20만원을 받고 용접공으로 45일 동안 일한 적이 있었어.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일당을 받는 게 가능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힘들지. 그 당시 비가 오는 날은 제외하고 밤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7시까지 철야 작업을 해서 20일 넘게 일하고 4백만원 이상 번 것 같아. 하지만 밤을 새우면서 높은 곳에서 하는 용접작업이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높고 힘든 작업이었어. 이렇게 일당이 높은 일은 매우 단기적인 일이고, 극히 예외적인 일이야. 만약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 일용노동자들 일당이 20만원이라면, 한 달에 600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한 달에 1백50만원 정도밖에 못 벌고 있어.”

【촉박한 공사기간】 (양○주, 남, 46세)

“비계공은 일당이 보통 13만원~14만원이니까, 목수나 철근공, 용접공 등에 비해서 센 편이지. 그렇지만 작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일은 없고 길어봤자 10일 정도야. 그런데 갑자기 비계를 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와. 하지만 미리 다음날 할 일을 정해놓고 일을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일을 하지. 그런데 일당 2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지난달에 하루에 30만원씩 받고 일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어. 그런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야. 당장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손해가 날 상황이면 하루에 30만원은 문제 가 아니지. 회사 측에서는 공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가 나는 것보다 일당을 좀더 주는 게 훨씬 낫거든.”

이렇게 IMF 구제금융을 탈출하면서 임금이 상승한 일용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IMF 경제위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맞게 되었고 현재 까지도 당시에 받던 임금과 별 차이가 없는 일용노동자들도 있었다. 특히, IMF 경

제위기에 의한 실직자가 일용노동자로 나선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에 비해 엄청난 임금의 하락으로 현재까지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임금의 급격한 하락】 (김○중, 남, 36세)

“IMF 당시에는 2달~3달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할 일이 없어졌어도 선뜻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IMF 전에 일용 전기공으로 일하면 서도 매달 22일 정도는 일을 하면서 200만원 넘게 벌어, 그럭저럭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외환위기로 임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돈 받고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임신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생활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아졌어요. 결국 적금과 청약저축을 깰 수밖에 없었고, 저와 일을 같이 하던 전기업체들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고 연락이 끊어지면서 점점 더 막막해져 갔어요. 그때부터 전기일과는 상관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구청에 가서 공공근로 신청을 하여 1998년 3월부터 9개월 정도 공공근로도 하게 되었지요.”

【임금의 급격한 하락】 (김○희, 남, 36세)

“IMF 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적어도 지갑에 수표를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IMF 실직 후 막노동을 하면서 받는 일당이 3만원~3만5천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지역정보신문을 보니까 배를 띠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태릉으로 갔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내일 또 나오라고 하더군요.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주머니에 차비와 담배값 정도는 가지고 다니죠. 점심이야 일하면 주니까요.”

임금이 회복된 일용근로자이든 그렇지 못한 일용근로자이든, 그들의 일당이 IMF 구제금융 당시에 비하여 올랐거나 상승하는 중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가 상승하고 일당이 IMF 구제금융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일용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정형편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지지 않는 가정형편】 (문○일, 남, 49세)

“아휴! 지금이야 일당으로 9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당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도 같이 오르면 엷일이야. IMF 당시보다 일당이 2만원~3만원 올랐지만 물가도 올랐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주5일 근무한다고 여행이다 취미생활을 즐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

【고용불안】 (조○행, 남, 34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일당 1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여금, 연차·월차 휴가 등을 받는 것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용노동자들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고용불안】 (김○준, 남, 46세)

“내가 지금 일당 10만원을 받아도 100만원짜리 월급쟁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 일 못나가지… 하지만 월급쟁이는 비록 100만원을 받아도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지… 월급쟁이가 100배 낫지. 지금은 모든 건설분야에서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야. IMF 전 보다는 조금 못해도… IMF 때에는 난리가 났잖아.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 그런데 앞으로 언제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고, 향시 불안하지. 일용노동자는 항상 불안한 거야. 큰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수입이 계속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용노동자는 하루살이야. 말 그대로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오고… 몸이 재산이지. 몸이 재산이다 보니 잘 사는 사람처럼 어디 다니면서 운동은 하지 못하지만 건강관리는 잘 해야 해.”

【여전한 생활고】 (안○근, 남, 41세)

안씨는 올해 3월보다 5월에 일을 좀 더 많이 했지만, 5월의 수입도 여전히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놈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지금은 장마철 전이니까 그래도 일을 많이 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유료 직업소개소에 나가지 않고 동부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여성 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임금은 아직도 남성에 비해 훨씬 적었다.

(2) 임금체불

IMF 구제금융 이후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폐업 사업장의 증가, 부도 발생건수의 증가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노동자에게 있어 당일 또는 약속된 기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

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조사대상 일용노동자 가운데 IMF 구제금융 이후에 임금체불을 경험한 일용노동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작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일용노동자도 일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하는 등 사업주와 일용노동자 모두가 임금이 체불될 것 같은 상황을 미리 피했기 때문인 것 같다. IMF 구제금융 이후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는 가능하면 그날그날 일당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주급제로 줄 것을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오히려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일용노동자들은 주로 IMF 구제금융 전에 체불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비공식적인 인적 유대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으며, 공식적인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한 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경험이 없었다. 이는 십장과 일용노동자 간의 비공식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한 상호신뢰에 의한 구두계약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즉, 사용자 측이 상호신뢰에 의한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함으로써, 일용노동자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IMF 구제금융 전 임금체불】(곽○현, 남, 41세)

“1천만원 중에서 7백만원밖에 받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주로 하도급관계에서 원청회사를 모르거나 십장이 없어진 경우였어요. 원청회사를 추적하기도 힘들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1997년에 일을 해주고 98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사장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민사재판을 해서 승소도 했어요. 하지만 계좌추적도 안 되고, 재산도 빼돌렸는지 가압류도 할 수 없어서 임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IMF 구제금융 전 임금체불】(문○일, 남, 49세)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일을 했었는데,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고 임금을 받기로 한 날에 가보니 그 사이에 공장이 망해버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 그리고 IMF 직전에도 일을 해주고도 120만원을 받지 못해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어. 하지만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서 직접 경매를 통해 임금과 이자를 합해 약 200만원을 받아낸 적이 있어.”

【IMF 구제금융 전 임금체불】(노○준, 남, 43세)

“IMF 직전인 1997년 여름에 안산의 레미콘 공장에서 설비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2개월 정도 용접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일하고 받지 못했던 180만원을 6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어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은 끝났는데,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6개월이 지나서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었죠.”

사례에서 보듯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십장이나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나 가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경험했던 일용노동자 중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임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3) 외국인 노동자관련

IMF 구제금융기에 우리 나라 일용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으므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일용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벗어나 차츰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용노동시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1월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합법적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대략 11만명~16만5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산업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문보도도 있다.⁴⁾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최근 외국인 일용노동자들—특히, 재중동포—의 임금도 우리나라 일용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할 때 약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이 비슷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p.7.

4) 조선일보, 2002년 7월 16일자.

【약간의 임금 차이】(곽○현, 남, 41세)

“작년에 외국인 용접사와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일당 7만원, 그 친구는 일당 6만원을 받았어. 6만원이면 사실 나와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지.”

【약간의 임금 차이】(노○준, 남, 43세)

“북창동 새벽인력시장에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에는 중국인들도 있긴 하지만, 재중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사람과 재중동포의 임금의 차이는 10만원~2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나라 사람이 라면(중국집에서 면을 뽑는 사람을 일컬음)으로 160만원~170만원을 받는다면, 재중동포가 같은 라면을 할 경우에 150만원 정도 받고 있죠.”

【약간의 임금 차이】(김○우, 남, 37세)

“북창동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재중동포나 중국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6월)까지 일한 중국집은 주방에서 4명이 일하고 있는데 주방장 1명만 우리 나라 사람이지 주방보조 3명은 모두 재중동포였어요. 중국집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같은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다면 한국사람은 월 180만원 정도 받고, 재중동포는 16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출입후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일용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관계도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용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동료로 생각하거나, 힘들게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남성 숙련 일용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고, 취업의 기회가 적어지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시기와 적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남성 숙련 일용노동자들은 IMF 구제금융을 벗어난 현재 비록 일용노동자들의 일당이 IMF 구제금융 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자신들의 임금이 기대 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를 재중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노동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경쟁관계로 인식] (김○준, 남, 46세)

“지난 겨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성수역 근처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하러 갔는데, 일당 8만원을 줄 수 있으니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왔어. 나와 같은 철근공은 적어도 9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8만원이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곳에서 철근공사를 하고 있는 10여 명의 인부들을 보니까 전부 재중동포들이었어. 재중동포들끼리 서로 소개해서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 재중동포들은 일당 7만 5천원, 심지어 7만원을 받으면서 일하니까 자연히 나 같은 일용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를 경쟁관계로 인식] (원○희, 남, 35세)

“IMF 전이나 IMF 즈음에도 일자리 구하는데 이렇게 고생한 적은 없었어요. IMF에서 벗어나 경기가 차츰 풀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우리 나라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 간 셈이죠. 이곳 북창동에 만약 100명이 일을 구하기 위해 나온다면, 일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20명~30명 정도밖에 안 되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임금도 오르지 않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일당 1만원~2만원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는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게 된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조사에 응한 일용노동자들 가운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숙련 일용노동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많은 숙련 일용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는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동료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과 임금 및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을 경쟁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료로서 생각하고 있는 숙련 일용노동자도 있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인력이 노령화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특히, 재중동포—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건설현장 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사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숙련 비계공이 재중동포에게 비계작업을 가르친 후에 함께 일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양○주, 남, 46세)

“요즘에는 재중동포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왔다는 고려인들도 볼 수 있어. 아무래도 우리 나라 사람보다 일하는 게 서툴지.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현장 경력도 있고 일을 알아서 잘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는 것이 없고 시켜야 일을 하는 것 같아. 더군다나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은 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 없지.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 비계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현재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년을 넘게 일을 해오고 있는 베테랑들이야. 40대인 내가 젊은 측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위험해서 이 일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밖에 없어.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등료관계로 인식] (양○주, 남, 46세)

“건설현장에 재중동포들이 엄청 많아. 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철근공과 목수가 가장 많지. 그렇지만 나와 같은 비계공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성남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한 비계공이 재중동포들에게 비계작업을 가르쳐 주고 일을 함께 하고 있어. 처음에는 잡부나 조공으로 재중동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현장에 필요한 공구나 재료를 올려 주는 정도의 일을 시키다가, 그들에게 1년 정도 비계일을 가르쳤다고 하더군.”

경기가 좋아지면서 여성 일용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업소들이 많아졌지만, 건설현장의 인력난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여성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소개소 조사과정에서도 30대 여성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20대·30대 여성 구직희망자들은 음식점과 같이 하루 11시간~12시간에 이르는 노동을 견뎌야 하는 일자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음식점의 홀에서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접대하는 젊은 여성의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20대·30대의 여성의 필요한 식당이나 업소의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강○윤, 여, 49세)

“요즘은 겨울철이 지나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구하러 나오는 시기인데, 예전에 비하면 직업소개소에 나와 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주로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보다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돼. 큰 식당에서 저녁시간에 주방보조를 했었는데, 홀에서 서빙하는 여성들은 재중동포들이 대부분

이었지.”

[여성 외국인 노동자] (김○우, 남, 37세)

“규모가 제법 큰 중국집의 홀 서빙은 주로 20대·30대의 재중동포 여성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월 110만원~12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 여성들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집 주인들도 재중동포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사에 응한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같은 동료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로 식당에서 재중동포와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생활수준, 또는 자신보다 못한 처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동료의식과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였다. 또 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기가 나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나라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숙련 일용노동자와는 달리 동료관계로 여기고 있었다. 음식점의 주인들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재중동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이 다른 음식점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도 올려주고 보너스까지 지급하기도 하였다.

[재중동포와 동료관계 유지] (서○순, 여, 49세)

“재작년에 음식점에서 일할 때 재중동포 아주머니와 같이 일을 했었어. 그 언니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기와 친척들을 초청해서 우리 나라에 온 것이었어. 한 달에 그 언니는 70만원을 받았고, 나는 90만원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 언니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어. 일도 잘했고. 나중에 음식점 주인이 10만원을 더 올려줘서 80만원을 받았지. 주인이 다른 사람은 내보내도 그 언니는 내보내지 않았고, 일하다가 혹시 다크기라도 하면 주인이 직접 병원에도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줬어. 그 후에도 일하러 가는 곳마다 재중동포 아주머니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 일도 잘하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해서 사이가 좋았어.”

3. 노동현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

1) 노동조건 및 환경

노동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구두계약을 했을 때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구두계약을 할 경우에도 일당과 출·퇴근시간만을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지금까지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왔으며, 사용자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의하기 전에 일용노동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과 관계없이,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임금과 노동시간만을 구두로 정한 후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곽○현, 남, 41세)

“IMF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들에게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IMF 당시는 돈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때였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다가 일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가는 당신 아니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필요없으니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능】(김○준, 남, 46세)

“주로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없지. 우리 나라 건설현장이 전부다 하청에 재하청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이에 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일용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소규모의 하청업체 혹은 개인 건설공사현장에 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건설공사의 계약구조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MF 구제금융 전 근로계약서의 작성】(문○일, 남, 49세)

“IMF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 그때는 사용자가 쓰자고 해서 썼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일을 할 때는 주로 9시간 이상 근무했지.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할 때가 일할 의욕이 더 생겼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현장은 노동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안전도구까지 지급하는 등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지. 우리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사업자 측에서 쓰자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쓰자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야. 일을 하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는 공사를 할 때에 쓰곤 했어.”

【IMF 구제금융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양○주, 남, 46세)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좀처럼 쓰지 않지만, IMF 당시에 대기업의 고층빌딩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있어. 신체검사도 받았고, 그 기업은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었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만족하고 일을 했지.”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 일용노동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물며 일용노동의 경험이 부족한 비숙련 일용노동자와 여성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 당시는 물론이고 경기가 나아진 현재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사용자 측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고 있지 않았다. 특히,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 종사자에게 있어 근로계약서】(원○희, 남, 35세)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중국집이나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런 업종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가서 일하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일하는 조건도 좋아지고, 어디다 하소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가게 주인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노동현장에서 일용노동자들이 처한 실제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이라는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고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남성 숙련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풍부한 건설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자신만의 작업수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개인 작업수칙] (문○일, 남, 49세)

용접공인 문씨는 일단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작업도중에 방해가 될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자신만의 작업동선을 그린다고 한다. 그 후에 작업을 진행하지, 그렇지 않고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작업도중에 다칠지 모르므로 비록 작업초반에는 작업환경을 파악하느라 일의 진척이 느리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작업을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김○준, 남, 46세)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그 업체는 안전관리가 엄격했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현장의 안전관리요원에게 걸리면 경우에 따라 작업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해당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얼마 안 돼”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 특히 남성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위험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숙련이든 비숙련이든, 조사에 응한 일용노동자들은 작업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을 느낀 적이 많았다고 말하였다. 실제 건설공사현장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작업복과 안전화를 항상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위험한 노동환경] (곽○현, 남, 41세)

“지금까지 일용노동을 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없지만, 난간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하는 고공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웬지 꺼리게 돼요. 현장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일을 하기도 했지요. 주로 트러스공사는 10m 이상의 높이에서 용접을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인데, 안전벨트를 매고 작업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일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안전밸트를 매면 작업의 진행이 둔해질까봐 지급할 생각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작업현장 분위기에 맞춰 일을 하게 되면 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일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일하기는 힘들어요. 안전화는 제가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신고 다니고 있어요.”

【위험한 노동환경】 (문○일, 남, 49세)

“사실 높은 곳에서 용접을 하는 일은 겁이 나. 안전벨트를 매기는 하지만 난간에 서서 용접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망설여지지.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일을 해야 하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한발은 이승, 한발은 저승에 있다는 말이 맞을 거야.”

【위험한 노동환경】 (안○진, 남, 52세)

“용접을 하다보면 건물의 외장을 용접하기 위해서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을 할 때가 있어. 10층 아니 그보다 높은 곳의 난간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벨트를 한다고 하지만 미끄러지면 아래로 추락이지. 비록 건물 중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있지만, 나는 그것을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떨어져도 그 안전망이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 그 망은 보행자들에게는 보호망이 될 지는 몰라도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특히, 돈을 벌 수 있으면 아무 일이나 하는 남성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환경에 노출】 (안○근, 남, 41세)

“용산에 있는 한 빌딩 지하 기관실에서 보일러 파이프의 석면 제거 작업을 했어요. 작업소개소의 소개로 일당을 나간 것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일의 내용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석면제거 작업이더군요. 마침 이전에 일할 때 사용했던 마스크가 있어서 그것을 쓰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작업을 했어요. 모르고 갔으니까 했지, 그런 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가질 않았을 거예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김○우, 남, 37세)

중화요리집 배달원인 김씨는 시간에 쫓겨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 가끔 인도로 주행을하거나 역주행을 하기도하는데, 이럴 때 위험함을 느낀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 해요. 그런데 배달을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맞은 편에서 자동차가 오는 데,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배달을 빨리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배달을 하다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인도를 주행하거나 역주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겁나요. 배달일이 오토바이만 타고 왔다갔다하는 일이니까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철가방을 들고 4층·5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어 다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현재 무릎관절과 허리가 좋지 않아요.”

2) 노동시간

현재의 노동시간은 IMF 구제금융기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특히 IMF 구제금융을 벗어나면서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계절적으로도 동절기가 끝나 건설공사현장이 활기를 띠면서 일자리가 증가하여 구직은 수월해졌지만, 오히려 작업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노동시간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아침식사도 거르면서 11시간 노동】(김○준, 남, 46세)

“5월에 아침 5시에 집을 나와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5층 건물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했어. 레미콘 차량이 11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아침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작업을 하였지. 이럴 경우에는 대개 일찍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날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어.”

【IMF 전과 후의 노동시간 비교】(곽○현, 남, 41세)

용접공인 곽씨는 IMF 구제금융 전과 그 후를 비교했을 때, IMF 구제금융을 출입한 현재 오히려 노동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IMF 전에는 대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 8시간 남짓 일을 했었죠. 하지만 IMF 이후 일하는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이지만,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나 6시 30분이에요. IMF 이후에는 9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요. 그리고 IMF 전에 일을 할 때는 점심식사 외에 간식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IMF 때부터 인심이 야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일은 없고 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간식 안 준다고 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죠.”

IMF 구제금융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 직전에는 대부분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1시까지였으며, 휴식시간(약 30분)이 1차례~2차례 정도 있는데 이때 국수 등의 간식거리가 제공되었고, 오후 5시 30분 정도면 작업현장을 정리하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쳤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기에는 작업시작 시간은 별 차이가 없으나, 휴식시간이 오후에 1차례뿐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식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간도 어두워 질 때(동절기는 6시, 하절기에는 7시~8시)까지였다. IMF 경제위기를 벗어난 지금도 IMF 구제금융기와 비슷한 노동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⁵⁾

[9시간 노동] (문○일, 남, 49세)

용접공인 문씨는 작업이 대개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작업시작시간 20분~30분 전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할 준비를 한다. 용접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기능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목수나 조적공들처럼 오전에 간식을 먹는 경우는 드물다. 12시에 점심을 먹고 한 시간 정도의 휴식 이후에 1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게 된다.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을 일하고 있다.

[9시간 노동] (김○중, 남, 36세)

“5월부터 일일취업센터의 소개로 하남시에 있는 정수장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물청소를 하고 있죠. 전에는 보통 아침 8시까지 현장에 가면 아침을 주고 오전 10시 반과 3시 반에 간식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아침에 도착했더니 사장이란 놈이 밥 대신 라면을 주면서 내일부터는 아침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시간이 늦춰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나오는 시간은 그대로 8시까지 나오라고 하더군요. 아침 8시까지 현장에 나오려면 집에서 6시에 출발해야 해요. 버스 두 번에 전철까지 타야 하고 2시간이나 소비해야 해요. 오고 가는 데 예비하는 돈이나 시간이 제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5분만 더 자야지 하고 시계의 알람을 눌러버리면 늦어서 아침도 못 먹고 일하러 나가죠. 점심은 순 풀만 나오죠. 간식도 안 주죠. 점심 먹고 저녁 6시까지 아무 것도 안 먹고 견디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바로 골아 떨어져요. 늘 그런 일의 반복이죠. 가족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11시간 노동] (원○희, 남, 35세)

중화요리집 주방장인 원씨는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가게에 출근해서 1시간 30분 정도 그날 요리할 재료들을 다듬는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10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10시 30분에 주방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12시 전에 모든 요리준비를 끝내고 12시에 손님이 밀려들어오면 그때부터 3시까지는 정신없이 바쁘다. 3시에 점심을 먹고 6시까지 저녁장사를 준비한다. 다시 6시부터 8시까지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8시에 뒷정리를 하고 9시부터는 퇴근을 준비한다. 일이 끝나면 소주를 한 병씩 마신다. 요리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일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이다. 매일 이렇게 하

5)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건설일용노동자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일 10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방하남·정연택·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p.5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권오현 박사에 따르면, 현재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은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하고 있다고 한다.(권오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2, p.9.) 하지만 이는 구직행위까지 포함한 노동시간이라고 파악되며,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일용노동자들의 대부분 9시간~10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골아떨어진다고 한다.

3) 노동강도

조사대상 일용노동자에 따라 현재의 노동강도는 IMF 구제금융기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IMF 구제금융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용근로자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IMF 구제금융 졸업 후에도 노동강도가 완화되었다는 의견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IMF 구제금융 졸업 후에 노동강도 완화】(안○근, 남, 41세)

“요즘은 IMF 때에 비해서 일이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시켰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성내동인가 천호동의 지하철역 철로에 물이 들어와 그것 퍼내는 작업을 했는데, 일당 3만원을 주고 일을 시켰었지요. 이거해라 저거해라 쫓아다니면서 일을 시켰어요. 요즘 현장에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돌아 가버리죠. 일이 많으니까… 장안동의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치우고 7만 원을 받았는데, 일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났지만, 작업 중간에 알아서 쉴 수 있었어요.”

【IMF 구제금융 졸업 후에 노동강도 강화】(김○중, 남, 36세)

“올해 5월부터 4명이 정수장 청소를 하고 있어요. 기술자들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저와 다른 잡부들은 남아서 2시간 정도 더 작업을 하고 뒷정리를 해요. 똑같은 일에 시간도 더 많이 하는 데 저는 7만원 받고, 기술자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15만원 이상 받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요. 사장이라는 작자가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짜증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니 미치겠어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일도 힘든데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정말 일하기 짜증나요. 일하고 돌아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팔이 부어있어요. 아휴, 혀리도 아프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 아이를 보고 있으면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일하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갑한 마음이죠. 자기 전에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담배만 서너 개비 피우게 돼요. 원래 이 일을 시작할 때 올해 12월까지 하자고 했지만, 힘들어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숙련 건설일용노동자들 중에는 IMF 구제금융기와 현재의 노동강도를 비교함에 있어 거의 비슷하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들은 유사한 작업을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

부분 일용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의 차이는 경제위기의 발생 또는 해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복잡한 하청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노동강도의 완화를 위해서는 하청구조를 철폐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작업의 반복】(김○준, 남, 46세)

“여름이 되면 철근이 헛빛에 가열되어 보통 사람은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지지. 하지만, 우리는 단련이 되어서 이쪽 어깨에 올려도 뜨거운 줄 모르고, 저쪽 어깨에 올려도 아픈 줄 모르지. 철근작업은 동작이 빨라야 해. 보통 32평형 아파트 한 층을 기준으로 철근을 까는 데에 4명이 작업을 하지.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철근공사를 짹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보통 한 세대에 한 명이 철근작업을 하는 셈이야. 계단은 2명이 호흡을 맞춰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마무리짓고 내려오고. 우리는 아침 7시에 올라가서 오후 5시안에 일을 끝내고 내려와. 슬래브의 철근작업 하루, 옹벽을 세우는 철근작업 하루…… 이렇게 하면 보통 아파트 한 층을 옮리는 데 이틀이면 돼. 몇 초안에 한 손에는 갈고리를 쥐고 한 손에는 철사를 쥐고 돌려서 철근을 고정시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작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아파트 한 층의 철근공사가 이틀만에 끝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일의 반복이야.”

【유사한 작업의 반복】(양○주, 남, 46세)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비계공 양씨는 3인 1조가 되어 건물 외벽에 분진방지막을 설치하는데, 그 높이가 보통 20m가 넘는 곳에서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추락사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가벼운 농담과 욕설까지 곁들여 가면서 일을 하지만, 일이 끝난 후 맥주잔 한 가득 따른 소주를 거푸 들이키면서 새벽잠을 설친 피곤함과 일의 긴장과 피로를 씻어낸다.

“우리 늘 이렇게 먹어야 해. 일이 끝나고 항상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힘들어서 일을 못해. 젊어서부터 해 온 일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티기 정말 힘들어. 빨리 먹고 집에 가서 자야지,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나올 수 있거든. 자, 빨리 마시고 가자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복잡한 하도급관계의 철폐】(김○준, 남, 46세)

“회사에서 직영처리(하청없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단종회사들(하청회사들)을 없애 버려야 해. 원청회사에서 인부를 거느리고 공사를 하면 임금도 제대로 나오고, 인부들 불평·불만없고, 일은 일대로 100%로 잘 되고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도급을 주다보니 하청업체, 재하청업체들도 남겨먹어야 하니까,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다 보니, 하청회사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공

기를 앞당겨 10일 할 일을 7일만에 끝내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같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노동강도는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복잡한 하도급관계의 철폐] (문○일, 남, 49세)

용접공인 문씨는 김포 근처의 공장설비 용접작업을 5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10일 동안 했다. 동료 3명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일당 12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일당 12만원은 IMF 이후 제일 많이 받은 금액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씩 일을 한 거야. 비교적 단기작업이었고 공장에서 바로 업체에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현장처럼 원청이 누군지도 모르는 복잡한 하도급관계가 없었고, 간식이나 여러 가지 대우가 좋아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사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연결된 복잡한 하도급관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노동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단순한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적정한 보수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노동자는 근로의욕이 상승하지. 그런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공기의 단축은 물론 작업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

IMF 구제금융 당시와 지금의 노동강도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규직 직원들보다 노동강도를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즉, 일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든 일은 거의 도맡아 한다고 하였다.

[정규직보다 심한 노동강도] (곽○현, 남, 41세)

용접공인 곽씨는 고적동 근처의 공장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있다.

“일당 9만원을 받고 공장의 직원들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정규직원들보다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힘든 일은 거의 제 차지예요. 주5일 근무제요? 딴 나라 얘기지요. 우리에게는 해당사항 없어요.”

여성 일용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체력적으로 버거울 정도로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일하기 곤란함을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IMF 구제금융에 의해 노동강도가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힘든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였다.

[여성 일용노동자의 노동강도] (강○윤, 여 49세)

“요즘에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게 돼. 진짜 이렇게 해서는 정말 너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돼.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일은 힘들고, 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설거지 힘들게 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실감이 나.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해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살 때가 많아. 정말 못 해 먹겠어.”

[여성 일용노동자의 노동강도] (서○순, 여, 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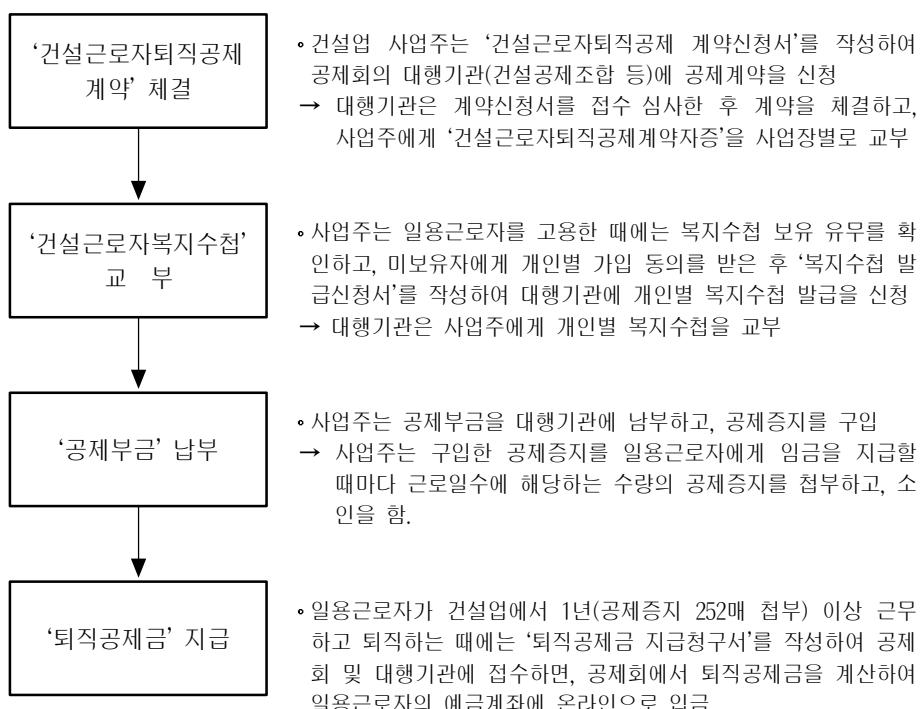
화곡동 근처의 음식점에서 찬모로 일하고 있는 서씨는 5월초에 일을 하다가 오른쪽 팔의 인대가 늘어나 3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주방에 들어가면 주로 칼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전에도 일을 하다가 어깨가 결리거나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 날은 팔의 인대가 늘어났었어. 결국 3일 동안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었지. 3일치 일당은 월급에서 제하겠지. 아파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남편과 별거하고 집을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4. 노동·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

1) 노동복지제도

건설일용노동자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수혜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그림 III-3> 참조).



자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내용 해설」, 2001, p.7.

<그림 III-3>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업무흐름도

이 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은 건설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고용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 성격의 노동자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금 적립시에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고, 종사한 직종과 건설업 근무기간 등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인정기능사 자격 부여 및 국가 차원의 각종 복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⁶⁾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용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본인의 부담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 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양○주, 남, 46세)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수입증지 사다 증서를 붙이고… 뭐 근로자 수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데도 귀찮고 해서 하지 않고 있어.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만, 장기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루하루 단기로 할 경우에는 힘들지.”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의 조합원인 5명뿐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복지수첩을 반드시 만들라고 권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건설직에 오랫동안 종사했지만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 없는 숙련 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복지수첩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5명도 사용해 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성상 작업현장을 자주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이 바뀔 때마다 복지수첩을 공사현장의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수령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절차의 번거로움】 (안○진, 남, 52세)

“퇴직공제제도는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을 통해서 들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복지수첩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길어 봤자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하고,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복지수첩을 그때마다 제출하고 받는 것은 귀찮은 일이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내용 해설」, 2001, p.5.

한편 퇴직공제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사현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 공공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과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공사현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의무가입대상 공사로 정하고 있다.⁷⁾ 또한 이와 상관없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도 퇴직공제의 임의가입대상 공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가입사업장은 현장에 이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현장의 노동자에게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규정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도의 사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은 주로 개인주택 및 건물의 공사현장이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퇴직공제의 의무가입공사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용노동자와 업체에 대한 관련 교육이 부재하여 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일용노동자가 미미할 뿐더러, 그 시행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⁸⁾

【퇴직공제 미가입 사업장】 (곽○현, 남, 41세)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복지수첩을 교부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퇴직공제제도가 있어도 제가 일하는 건설현장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사업주에게 복지수첩을 내밀고 증지를 붙여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퇴직공제제도, 복지수첩 모두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제3호.

8) 건설산업연맹 정책기획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p.41.

2) 사회복지제도

(1) 고용보험

1995년 7월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0.5%와 임금총액의 0.9%~1.5%를 공동 부담하여 노동자의 실직 시에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인데,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표 III-4> 참조).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⁹⁾

<표 III-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 추이

시 기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9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	70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는 40억원 이상)
199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는 34억원 이상)
1998년 3월	5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는 34억원 이상)
199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는 3억4천만원 이상)
1998년 10월	1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는 3억4천만원 이상)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오고는 있지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3억4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건설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건설일용노동자 중에서도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의 건설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해야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조사결과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단기간의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고용보험에 적용대상자가 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본 기억이 없었다. 게다가 하루

9) 고용보험법, 제1조.

하루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는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적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곽○현, 남, 41세)

“고용보험이요? 지금 일하러 다니는 곳도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데 고용보험에 들어 주려고 하겠어요? 고용보험? 그런 것 기대도 안하고 일하고,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용노동자들이 노임을 받을 때 노임 중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가 된다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나, 간혹 악덕 사업자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료(임금총액의 0.5%)는 떼고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악덕 사업주 때문에 필요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일용노동자가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양○주, 남, 46세)

양씨는 IMF 구제금융 당시에 대기업 건설업체의 하청업체에 들어가 빌딩의 비계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일당 9만원에 1년 2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업체에서 돈만 떼고 가입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회사 측이 매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며 내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용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었어. 같이 일을 했던 십여 명의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없었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결국 받지 못했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데도 노동자들에게 그런 짓을 했어.”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으로 처리해야 치료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재발 시에 재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상¹⁰⁾으로 처리했던

10) ‘공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정 요양비(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월급의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것도 산업재해보상으로 재청구가 가능하다. 치료 중에 공사가 끝나도, 노동자는 계속 보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고, 건설현장도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이 적용되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공사가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 원천적으로 원청이 산업재해보상의 책임자가 되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고용기간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법규상으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개별 경험요율에 의한 보험요율의 인상과 시공능력평가 또는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게 주어지는 별점 등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¹¹⁾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도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산업재해처리를 하기보다는 공상처리를 해서 노동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산업재해가 많으면 사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아닌 공상으로 처리】 (안○진, 남, 52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을 사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은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일반 사고로서 처리하려고 하지, 그에 따르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지만… 나도 작업 중에 몇 번 다쳤었는데, 그때마다 사용자 측에서 산재보험에 아닌 공상으로 치료비 등의 비용을 처리해 주었어.’**”

일용노동자들 가운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으로 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의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1) 박인상·이호웅,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1, pp.21-22.

일용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항상 음식조리 시에 화기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작업환경에 있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제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에 놓여 있다.

[산업재해보상도 공상도 어려운 일용노동자] (월○희, 남, 35세)

“**산재보상이요?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사업자가 공상으로라도 치료비를 물어주죠. 동네 종국집에서 일하다 다치면 그런 게 통하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이 재산인데, 칼질하다가 다치거나, 면을 뽑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고, 음식을 튀기다가 기름에 화상을 입어도 치료를 위해 일을 못나오게 되는 경우에도 보상책이 아무 것도 없죠. 그냥 마음 좋은 주인이나 만나면, 치료비나 하라고 얼마 주겠죠.”**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일용노동자들은 회사와의 깔끄러운 관계 때문에 복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일용노동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용노동자들도 회사 측의 그러한 태도를 미리 알고 복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안전시설의 미비 또는 위험요인의 노출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오히려 산업재해를 당한 일용노동자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몰아 부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산업재해 후 복직의 포기] (조○행, 남, 34세)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처리되면 대부분 복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사한테 폐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복직하느냐 하고 생각을 해요. 회사 측의 경우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도 다시 복직하지 않으려고 해요.”**

[산업재해 후 회사의 냉정한 태도] (노○준, 남, 43세)

“**H빔을 절단하는 작업 중 H빔을 뒤집는 과정에서 지렛대에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현장 근처의 지정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고 김스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현장의 관리자가 숙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작업 중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야 하는데, 숙소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스를 한 채로 차를 몰아 집 근처의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지요. 완쾌가 되어도 복직할 생각도 없었고, 그만둘 생각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동안 잘 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다치니까 전과는 달리 나를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싫었어요.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만 임금의 70%를 받았어요.**

물론 입원비와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했지요. 그리고 퇴직금 230만원을 받고 일을 그만두었어요.”

조사과정에서 작업도중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당하여 회사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복직 후에 퇴직권고를 요구하는 회사 측에 맞서 싸워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복직에 성공하여 2년 6개월 넘게 같은 공장을 다니고 있는 일용노동자도 있었다.

【산업재해보상 후에 복직】 (조○행, 남, 34세)

“회사 측에서는 한쪽 손은 괜찮으니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일단 일은 안 해도 좋으니 나오기만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4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환자가 싫어도 산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대충 보상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했지요. 그리고 산재처리가 끝난 후라도 1개월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해고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3)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사회보험으로서 노후의 생계보장수단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당사국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건설일용노동자라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용노동자들의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는 사회적 차원의 노후대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일용노동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13명, 지역가입자인 사람이 7명이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기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반분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므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국민연금 미가입] (최○순, 여, 45세)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돈 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안○진, 남, 52세)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만원 정도 들고 있어. 노후생활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라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아. 10년 전부터 고향(전라북도 순창)으로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어. 올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녀석 군제대하고 학업도 마치면 마누라와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서 과수원을 할 생각이야. 현재 고향에 땅을 조금씩 사놓고 있어. 연금으로 식비 정도는 나오겠지? 과수원이 잘 안 될 때에는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겠지.”

[지역가입자로서 과중한 부담] (노○준, 남, 43세)

“국민연금은 나와 아내가 각각 5만원 정도씩 내고 있어요. 아내는 오락실을 운영하고, 나는 오토바이 택배와 용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지만, 우리 살림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국민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의 불안정성, 국민의 불신팽배 등을 들 수 있는데, 재정의 불안정성은 낮은 보험료 부담과 높은 연금급여 체계,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¹²⁾ 조사과정에서 일용노동자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노후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안○근, 남, 41세)

“국민연금이요? 계속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요.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것 나중에 탈 수 있나요? 나중에 가면 돈이 바닥나서 연금을 탈 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들어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지와 불안감] (강○윤, 여, 49세)

“나는 원래 돈을 잘 쓰지 않아.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국민연금으로 8만원을 내는 거야. 나는 자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노후에 남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기

12) 전연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1998, pp.18-19.

때문이지. 국민연금은 노후걱정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부으려고 노력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타 먹지도 못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상한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설마 잘못되지는 않겠지?”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범위는 ‘모든 사업장’과 고용기간 ‘1월 미만 적용제외’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노동자로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라도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반분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가 많았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용노동자는 아파트나 빌딩의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였고, 그 이외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양○주, 남, 46세)

“IMF 즈음, 아마 그때 2년 정도는 대규모 건설사의 빌딩건설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거든. 그때는 일당이 비록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나갈 때보다 작았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월급에서 제했었지. 지역에서 낼 때보다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

【부담스런 국민건강보험료】 (안○진, 남, 52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나는 항상 보험료를 낼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사실 병원에 가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런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 내게는 그 돈도 부담이 돼. 보험료가 아깝다고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

(5) 기 타

조사에 응한 일용노동자들 중에 아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람 1명을 제외하고는 수급자는 없었다. 이 사람은 1급 지체장애인인 아내와 살고 있는데, 아들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지금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혼인신고 안 함] (김○우, 남, 37세)

“아내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1급 장애인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로 아내와 두 아이 앞으로 66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빚을 내서 살고 있지요. 아내 역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웃에게 돈을 빌려쓰거나, 제가 중국집 배달로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주고 있지만, 그 돈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를 제외하고 아내와 두 아이들이 생활하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해요. 제에게는 지금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저 하나 잘못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남아있을 가족들이 걱정돼요. 시장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프다고 약이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배고플 때 아이들 우유나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어떻게 되든 괜찮아요.”

3) 실업대책사업

(1)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고실업 시기에 제도적인 실업자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이다.¹³⁾ 일용노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업 시에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것이므로 단순한 공적부조제도보다는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한다.¹⁴⁾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1998년 한 해 동안만 1조444 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총 438천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약 15%의 건설일용노동자만이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약 3%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실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공공근로사업은 건설일

13) 서울특별시, 「실업대책 백서」, 2001, p.54.

14) 허재준, “건설노동시장의 고용관계 특성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p.64.

용노동자들에게는 그리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¹⁵⁾ 조사과정에서도 일용노동자들, 특히 건설직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율 및 만족도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IMF 구제금융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낮은 일당과 작업의 단순함 등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층들에 대한 생계보조 수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남성 숙련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에 불참】 (문○일, 남, 49세)

용접공인 문씨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IMF 당시에도 공공근로에는 나가지 않았어. 한 달 동안 공공근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면서 10일 정도 일하는 것이 보수가 더 나았으니까. 아무리 IMF 때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가 많았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용접일이 아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

【공공근로사업에 불참】 (안○진, 남, 52세)

“공공근로? 그것 신청도 해보지 않았어. 차라리 일을 나가지 않고 놀면 놀았지, 2만원 남짓한 돈을 받고 일하기는 싫었어. IMF 당시에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그렇게 쪼들릴 정도도 아니었지. 공공근로는 노인이나 아줌마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공공근로사업에 불참】 (김○준, 남, 46세)

“공공근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이 먹고 일이 없어 집에 있는 노인들이나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공공근로를 나가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도시락 먹고 고기나 구워 먹는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일용노동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

15) 허재준·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pp.9-10 참조.

사대상 여성들은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덜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 일용노동자 가운데서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다.

[공공근로사업에 만족] (김○춘, 여, 49세)

김씨는 여성가구주였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었다.

“공공근로에 대해 동네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면서, 동네에 붙여 놓은 벽보를 보고서 알게 되었어. 그것 하니까 너무 좋았어. 공공근로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어. 보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만족] (한○자, 여, 60세)

“공공근로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아서 좋아. 지난 겨울에는 구청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개천 수로를 정비하는 일을 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시간씩 2시간을 쉴 수 있었어. 이번에도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안 되면, 구청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거야. 생활이 막막하니까.”

이에 비해 남성 비숙련 일용노동자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공공근로사업에 불만족] (안○근, 남, 41세)

“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공공근로를 하였죠. 여름에는 일당 2만5천원에 초등학교의 보도블록공사를, 겨울에는 일당 2만2천원에 송파구청 별관 지하의 벽지작업을 했어요. 한여름에 땅파는 일인데, 요즘 같으면 누가 2만5천원에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때는 일이 없어서 한 거죠. 또 일의 강도, 내용, 성별로 나누어서 일의 성격에 맞게 사람을 투입시켜 일당을 적정하게 줘야지. 이건 뭐 아주머니, 아저씨, 청년, 노인들을 한 군데 모아 놓고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 먹고 어디 가서 몇 시간 후에 나타나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일하는 분위기만 깨지지요. 송파구 별관에서 일할 때도 그랬죠. 공무원들이 감시하면 뭣해요. 그 넓은데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모르지….”

[공공근로사업에 불만족] (김○희, 남, 36세)

“IMF 당시 공공근로에 며칠 정도 나가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나태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을 하는 건지, 그냥 왔다갔다하는 건지… 일을 안 해도 일당은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돈 받기는 싫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문제】(최○순, 여, 45세)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구청직원에게 이러한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신청자를 추려내서 구청에 명단을 올리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문제】(한○자, 여, 60세)

“공공근로를 가보면 종종 30대~40대 젊은 여자들이 나오곤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여자들에게 왜 여기에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여기 나오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데’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 시켜주지 말아야 해. 일하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이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 신청도 받아 주지 말아야 해.”

(2) 직업훈련

동절기 건설일용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을 설치하여 약 1,000명에게 5대 도시(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의 기능대학에서 1998년 12월~1999년 2월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모듈식 일용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기능습득이 용이한 조적, 미장, 타일, 도배, 도장, 배관, 보일러시공, 용접의 9개 직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조사대상자 중에 공공이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일용노동자들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IMF 구제금융 전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숙련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는 있었지만,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어야 했던 IMF 구제금융 당시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훈련기간이 길어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을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소득의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직업훈련을 받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현재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과 관심을 보이는 노동자들도 가끔 있었지만, 여전히 직업훈련을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 사람은 없었다.

직업훈련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더 많았다.

【긍정적 의견】(문○일, 남, 49세)

“IMF가 터지고 나서 명예퇴직을 당해 주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놀고 있을 때 기능이라도 배워 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문씨는 30대 후반에 직업훈련을 받아서 용접공의 길로 들어선 건설일용노동자이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살기 위해 열심히 직업훈련원에서 용접을 배웠고, 지금은 숙련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직업훈련 중에서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내 경우에는 용접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직 배우지 못한 용접기술도 있고,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는데, 아르곤 용접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 원자력 발전소용 파이프 또는 석유 정제시설의 파이프 등 합금이나 비철금속을 용접하는 데 아르곤 용접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 개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술은 지도를 잘 받아야 해.”

【긍정적 의견】(김○희, 남, 36세)

“당연히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없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소주 한 잔 하고 집에 가면 곳아떨어지는 반복된 생활로는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죠.”

【긍정적 의견 : 생활비보조 필요】(안○근, 남, 41세)

“직업훈련이요. 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는 직업훈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니까 직업훈련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지게차 등 중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제가 100만원을 벌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3개월~6개월 이상이나 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일용노동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생계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직업교육을 받으려고 엄두도 못 낼 거예요.”

【부정적 의견】(곽○현, 남, 41세)

“지금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훈련이

나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정적 의견 : 구조적 개선 필요】 (김○중, 남, 36세)

“생활비가 완전히 지원이 된다면 직업훈련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로요. 구조적으로 볼 때, 기술을 배우고 난 후에 현장에 나가도 그나마 지금 받고 있는 일당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한 기능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일단 직업훈련을 시키고자 한다면,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직업훈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용노동자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에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일용노동자들은 내실화를 통해 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효과에 회의적 반응】 (조○행, 남, 34세)

“용접을 1986년부터 했으니까 16년 가까이 한 셈이죠. 그래도 아직도 덜 배웠다고 생각해요. 용접이라는 것이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으면 손에 익을 때까지 다시 해야 하거든요. 지금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직업훈련원에서 용접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능을 익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현장마다 작업마다 응용해야 할 것이 많아요. 물론 직업훈련도 중요해요. 그러나 단기간의 직업훈련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효과에 회의적 반응】 (노○준, 남, 43세)

“직업훈련이요? 가능할까요? 나이가 있는데… 한 번은 아르곤 용접을 배우려고 한 달 정도 쫓아다녀 봤는데, 잘 되지 않더군요. 배우는 것도 더디고… 용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직업훈련원에서 1년 정도 배워야 현장에 나와서 조금 할 수 있을까? 일을 다니다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경험에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IV장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와 과제

1.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

2.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과제

제IV장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와 과제

1.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

공공의 노동정책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임금, 노동시간, 고용문제, 노사관계 등 을 다루는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직업훈련,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다루는 ‘노동복지정책’¹⁾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각종 법률, 제도, 각종 대책, 지침 등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혹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지침의 연장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집행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의 2002년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직업전문학교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취업정보은행, 취업박람회, 일자리발굴전담반), 노사정협의회, 노동조합활동 지원(설립 및 변경신고, 노동조합 관계자교육),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 등 극히 제한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의 2002년 업무계획을 보면 시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증진, 장묘문화 개선, 장애인복지 증진,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시민건강 증진, 노숙자 보호대책 등으로 노동복지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안정과의 노동정책도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주로 실업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일용노동자를 정책에서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을

1) 노동복지정책은 별개의 노동정책으로 추진되며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직접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정책이 노동복지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절하는 법이나 제도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독자적인 일용노동정책을 마련·시행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표 IV-1>과 같은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일용노동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과 노동복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결했으면 하고 바라던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정합의문이 정착화되었을 때,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및 노동복지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직업훈련과 홍보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표 IV-1>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노사정합의문 내용

분야	일용노동자관련 주요 내용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와 통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우리 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함.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함.
근로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및 행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함.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확충방안을 강구함.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복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함. 국민건강보험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국민연금 :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동자·사업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추진하도록 함. 사회보험 적용 촉진 : 정부는 사회보험의 미신고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 직업능력개발 확대 및 복지 확충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한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강구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 차원에서 일용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용노동자에 대한 홍보사업과 일상적인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을 활용한 정책범위 내에서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우선 일용노동자에 대한 홍보는 서울시가 적은 노력을 들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 각종 노동복지관련 제도 및 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새벽 인력시장 등 일용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대규모 건설현장 근처에 부착하여 일용노동자들이 쉽게 이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을 활용한 정책범위 내에서의 일용노동정책으로는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물리적 지원,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지원,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과제

여기에서는 서울시가 비교적 손쉽게 집행할 수 홍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적인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을 활용한 정책범위 내에서 보완적 일용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지원

일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이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그리고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지원은 새벽 인력시장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지원, 그리고 전문 직업상담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구직등록, 취업알선, 각종 노동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IMF 구제금융기 당시에 새벽 인력시장은 일용노동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나, IMF 구제금융기를 벗어난 현재는 구직과 구인을 위한 사람들이 봄비는 등 그 기능을 되찾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물리적·행정적 지원이 따른다면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물리적 측면의 지원은 서울시가 하고, 행정적 측면의 지원은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는 새벽 인력시장이 위치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현재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구직·구인을 할 수 있도록 대기소, 화장실, 사물함, 자동판매기, 보안등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편의시설을 보수·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벽 인력시장은 도로에 위치해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벽 인력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대기소가 있었거나 현재 있는 새벽 인력시장의 경우(신월동과 사당동의 새벽 인력시장)는 멀티된 대기소를 복원하거나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벽 인력시장의 경우(사가정과 구로공단의 새벽 인력시장)는 대기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여건상 대기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새벽 인력시장은 화장실, 자동판매기, 보안등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한 고용안정센터와 일일취업센터는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전문 직업상담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구직등록, 취업알선, 각종 노동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수 백명이 구직·구인행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벽 인력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2인 정도의 전문 직업상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북창동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직업상담원의 파견이 시급하다. 북창동의 인력시장은 다른 새벽 인력시장과 달리 무허가 개인 직업소개업자들에 의한 일자리 소개가 행해지고 있다. 소개요금도 노동부 고시와는 달리 직업소개업자 마음대로 구인자에게 받고 있으며, 고용기간을 1개월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월급에서 제하는 등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안정센터는 무허가 개인 직업소개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또 북창동의 인력시장은 다른 새벽 인력시장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직업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2)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서울시와 자치구는 당해 지역에 위치한 유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즉 불법 소개행위, 선불금 징수행위, 직업소개요금의 부당징수 등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유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안정법 등에 의하면 유료 직업소개기관은 건설노동자 파견행위, 선불금 징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되 임금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료 직업소개기관은 소개요금 전액을 구직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면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유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 · 단속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 단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는 그 처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취업정보은행이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각종 위법행위 및 소개료 부당징수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유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도 및 단속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잊은 자리이동, 업무의 과중, 인력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개료 부당징수행위의 경우는 그동안 유료 직업소개기관이 구직자에게 임금의 10%를 징수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온 상태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지도 ·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 직업소개기관의 직업알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개료 부당징수를 이유로 유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도 · 단속을 할 경우, 일용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료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대부분은 사회정책적 지

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고, 유료 직업소개기관은 시장의 원리에 맞게 구인업체의 확대 발굴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일용노동자에 대한 소개료 부당징수행위는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상담원에게 연1회의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소개기관의 자체 정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체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고용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유료 직업소개소의 각종 부조리와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고용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자 및 종사자를 소양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민간 무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용노동자에게는 원활한 구직이 곧 고용안정이며, 부당한 착취의 근절이 곧 임금보전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무료 취업알선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일용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무료 직업소개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존재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취업알선센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등 공공이 민간 무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기관에 대한 홍보사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일용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적에 따라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비용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공의 지원에 의해 민간 무료 직업소개기관이 활성화된다면, 부수적으로 유료 직업소개기관이 구인·구직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지원

일반적으로 자활공동체는 봉제업, 도시락배달업, 세탁업, 청소용역업, 건설업 등 창업형 자활공동체와 간병인파견사업, 집수리사업, 음식물찌꺼기사업 등 공공근로 민간위탁 또는 특별취로사업에서 발전한 자활공동체가 있다.²⁾ 이들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용노동자인데, 서울시는 자활후견기관과 협조하여 이들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우수 자활공동체를 지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규모 사업 계약시 우선적으로 수주기회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유니폼의 명찰, 야유회·체육대회 등의 도시락, 청사 및 물탱크의 청소, 명절 시의 선물 등을 이들 자활공동체에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자활공동체는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01년 9월 보건복지부의 현물주거급여 시행안내문에 따르면,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유지수선비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영구임대주택 등의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집수리사업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극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소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수리사업단 등 자활공동체에 우선 위탁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사례]

현재 서울시에는 1999년 8월 말에 '건설노동자공동체 나눔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일용노동자 공동체가 있다. 나눔건설은 1999년 2월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10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지역 내의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료 집수리를 하는 "사랑의 집수리 특별취로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나눔건설은 수요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자체 건축사업을 수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2001년까지 병원 인테리어공사, 빌딩 칸막이공사, 청소년쉼터 개축공사, 주택 집수리공사 등 12건의 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여러 가지 외적 환경³⁾ 때문에 사업수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의 지원이 있으면 사회적

2) 한국도시연구소,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의 길잡이」, 2000. 3 참조.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공공근로 민간위탁 또는 특별취로사업에서 발전한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가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할 경우에는 소규모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자활공동체에 꾸준한 사업수주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 이같은 자활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수선사업, 장애인 통행보조시설 설치사업, 보도블록 정비 사업 등의 공공공사에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현재 건설현장은 청년층의 건설노동 기피현상으로 숙련기능공들이 부족한 상황이며,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통로의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기능습득이 상당부분 건설현장의 동료 기능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기능공 부족현상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 1998년 12월말에서 1999년 2월말까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일용직 등 동절기 저소득계층 생계안정대책’에 따라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총 315명의 건설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적,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보일러, 배관 등의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2년 현재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목공 80명, 특수용접 80명,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용접 60명에 대해서만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숙련기능공 부족 및 숙련형성통로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 및 신규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욕구를 6개월

3) 나눔건설은 ① 폐쇄적 건설일용노동자 취업구조(인맥에 의한 취업), ② 소규모 건설기능직 인력 풀(pool), ③ 대규모 자본이 드는 건설시장의 특성 때문에 경쟁력의 부재 등을 꼽고 있었다.

에 한 번씩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욕구조사를 토대로 5개 정도의 건설기능관련 직종을 선정하여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과정으로 집중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내용은 직업훈련 수료자들이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하되, 학과수업도 적절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훈련과정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훈련수당 지급 이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훈련수당을 부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생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현장 잡부 일당의 $\frac{1}{3}$ 수준(40,000원~50,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준기공이나 조공을 대상으로 한 단기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훈련시간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을 마친 후인 저녁시간에 2시간씩(동절기에는 7시~9시, 하절기에는 8시~10시), 훈련장소는 전철역에서 가까운 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강사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장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직종과 개인별 기능숙련도를 감안하여 주4회 정도로 총 8주~12주 동안 준기공과 조공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면서 숙련기능공 부족 및 숙련형성통로 부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 서울시는 고용보험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도록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업과 함께 훈련장소의 확보, 강사비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건설노동력의 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업주 또는 건설노동조합에 대해 직업전문학교 내의 훈련과정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서울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인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일용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용노동자의 노동복지 향상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책일 것이다.

우선, 관급공사의 발주자로서 서울시는 경쟁입찰 시에 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용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과 퇴직공제제도 적용 등을 입찰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과 퇴직공제제도 적용 모두를 필수 입찰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퇴직공제제도는 가입한 사업주에게 시공능력 평가 시에 기술능력평가액에 ‘퇴직공제불입금×5’를 가산하여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하기보다는 입찰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적용은 필수 입찰조건으로 하고, 퇴직공제제도 적용은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중에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키고 있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체 발주한 사업에 대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은 일반 건설업자 간의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발주자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있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공사의 계약단계에서부터 금지시킬 수 있다.⁴⁾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용노동자를 일정한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이나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곳의 일용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에게 맡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제V장

요약 및 결론

제V장 요약 및 결론

IMF 구제금융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현장의 변화, 노동·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일용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IMF 구제금융의 여파에 의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임금이 감소 등은 일용노동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일용노동자가 꽤 있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일용노동자들은 다양한 구직경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비숙련 일용노동자들과 여성 일용노동자들은 과다한 소개요금을 감수하면서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게 되었고, 인맥을 통해 주로 일자리를 구했던 숙련 건설일용노동자들 중에서도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금의 경우에 숙련 건설일용노동자는 일당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지만, 대체적으로 2000년부터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는 IMF 구제금융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이상 오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비숙련 일용노동자와 여성 일용노동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여 매우 어렵게 가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와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현재도 IMF 구제금융기와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경제위기 극복이 이들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건 및 환경의 경우 IMF 구제금융과 상관없이 일용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요구대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은 IMF 구제금융에 따라 높아지고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 노동시간은 직종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시간~10시간 정도, 중·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10시간~11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다. 중화요리집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11시간~12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셋째, IMF 구제금융 이후 현재까지 노동복지 및 사회복지제도가 대폭 확충·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복지제도의 변화가 일용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은 제도의 성격상 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어 가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고,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주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에 복직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노동자로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는 한 명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실업대책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은 일부 여성 일용노동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숙련 남성노동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이 적어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 경험이 있는 비숙련 남성 일용노동자의 작업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부분은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훈련,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은 이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일용노동정책은 국가의 법·제도와 중앙정부의 각종 대책 및 지침에 의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집행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시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의 업무도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일용노동자를 정책에서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볼 때 독자적인 일용노동정책을 마련·시행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용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복지의 향상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복지제도 확충 등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성격상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집행되어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다.

지방정부인 서울시 차원에서는 일용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상적인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 등을 활용한 정

책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새벽 인력시장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구직등록, 취업알선, 각종 노동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물리적 지원과 노동부의 행정적 지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료 직업소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즉, 불법 소개행위, 선불금 징수행위, 직업소개요금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상담원에게 연1회의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소개기관의 자체 정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무료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활후견기관과 협조하여 간병인파견사업, 집수리사업, 음식물찌꺼기사업 등과 같은 자활공동체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주축인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가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할 경우에는 소규모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수선사업, 장애인 통행보조시설 설치사업, 보도블록 정비사업 등의 공공공사에 건설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및 신규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훈련을 실시해 되, 건설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건설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훈련수당 지급 이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훈련수당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 직업훈련생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준기공이나 조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일용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용노동자를 일정한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내용 해설」, 2001.
- 건설산업연맹 정책기획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 김 훈·심규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 김동섭·서호원·오성욱, 「직업안정법 해설—행정해석 및 직업소개소 창업·운영—」, 서울: (주)중앙경제, 2002.
- 김수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 노동부, 「'97 노동백서」, 1998.
- _____, 「일일취업센터 운영요령」, 1998.
- _____,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 2001.
- 박명수,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5.
- 박인상·이호웅,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2001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01.
- 방하남, “건설업 일용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정 :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3집, 봄호, 1999.
- 방하남·정연택·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1997.
- 백석근,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극복방안”,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제27호, 1997.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0. 9. 19.
- 서울특별시, 「실업대책 백서」, 2001.
- 실업대책모니터링팀, 「서울시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심규범,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현황 및 고령화 실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 _____,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 _____, 「한국 건설노동시장의 비공식성과 숙련형성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현장 실태에 관한 공청회－노동시간, 고용, 복지를 중심으로－」 자료집, 2001. 3. 13.

전연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 · 세대내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1998.

전일노협편집위원회, 「건설노동자－역사와 과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1995.

정이환, “주변노동자의 사회의식 :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 2000.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서울: 경문사, 1996.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18호, 2000.

한국고용서비스협회, 「직업소개사업계의 자체 자율정화 발전방안」, 2002.

한국도시연구소,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의 길잡이」, 2000. 3.

허재준, “건설노동시장의 고용관계 특성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1. 10. 17.

허재준 · 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